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000-001491-10

화학사고는 ZERO!
청렴의식은 T O P !

승인번호
제 106010 호

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

2019

환경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목 차

제1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개요

Ⅰ. 조사개요 ····· 3
Ⅱ. 보고절차 및 방법 ····· 9
Ⅲ. 조사대상 여부 확인 ····· 10

제2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작성 안내

Ⅰ. 조사표 작성방법 ····· 17
1. 일반사항 ····· 17
2. 제품취급현황 ····· 19
3. 비대상 신고서 ····· 46

제3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사용 매뉴얼

Ⅰ.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소개 및 구성 ····· 49
Ⅱ.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이용방법 ····· 51
1. 시스템 접속하기 ····· 52
2. 신규사업장 시스템 가입하기 ····· 54
3. 기존사업장 ID&PW 찾기 ····· 58
4. 시스템 로그인 ····· 60
5. 통계조사 보고 ····· 61
6. 제출하기 ····· 84

| 부 록 |

Ⅰ. 화학물질 통계조사 질의·답변 사례 ····· 89
Ⅱ.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 101
Ⅲ. 조사표 작성시 참고사항 ····· 111

제 1 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등의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OECD 환경규정 등 국제협약에서 화학물질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위해성 관리를 의무화 함
- 사업장의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2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하여 고시
- 통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및 변경승인 제106010호('96.5.29)

3 조사대상 기간

- 조사대상 기간 : 2018. 1. 1 ~ 12. 31까지(1년간)

4 조사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5 조사대상 화학물질

-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혼합물을 포함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
-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함 (화관법 제2조1호에 근거)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관법 제2조7호에 근거)

- 유해화학물질 지정 여부 등 화학물질 정보 확인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을 통해 검색이 가능함

6 조사제외 화학물질

-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물질로 한다.
-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물질

-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 고유의 형상(모양과 상태)을 가지면서 사용 중 형상이 변화되지 않은 완제품
-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 「한국표준산업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 C, D 또는 E 업종 사업장은 연간 사용(취급)량에 관계없이 통계조사표 제출 대상

<통계조사표 제출 기준>

업종 구분	일반화학물질(kg)	유해화학물질(kg)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	100
B. 광업	1,000	100
C. 제조업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F. 건설업	1,000	100
G. 도매 및 소매업	1,000	100
H. 운수 및 창고업	1,000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100
J. 정보통신업	1,000	100
K. 금융 및 보험업	1,000	100
L. 부동산업	1,000	10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0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000	10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0	100
P. 교육서비스	1,000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	100

7 조사표 제출기한

- 조사표 제출기한 : 업종별·규모별 조사표 제출기한이 상이하며 다음 각 호에 따름.

① 조사연도의 다음해 7월 31일까지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별표](이하 “[별표]”로 한다)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또는 4종을 보유한 사업장

② 조사연도의 다음해 8월 31일까지

-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③ 조사연도의 다음해 9월 30일까지

-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8 제출방법

- 조사대상 사업자는 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표”를 작성하여 통계청 나라통계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웹사이트(http://www.narastat.kr/chemdata2019)에서 작성·제출 하여야 함
- 조사대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조사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자는 통계조사지침에 따라 “비대상 신고서”를 통계청 나라통계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웹사이트 (http://www.narastat.kr/chemdata2019)에서 작성·제출 하여야 함

9 서류의 기록·보존

-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 등의 확인관련서류와 조사표를 작성하는데 이용한 자료(화학물질 관리대장,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 등)는 5년간 보존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10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 제도의 개요
  -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하여 화학물질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공개
  - 다만, 국가안보·영업비밀 등과 관련되어 공개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공개방법
  -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http://icis.me.go.kr/CDRopen)'을 통해 공개
  - 다만,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물질명칭과 CAS No., 취급규모, 제품명칭 등을 우선 공개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질 또는 유해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는 제외)
>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질

〈 화학물질 조사결과 공개 사례 〉

1. 사업장의 일반정보

• 본 정보는 '(주)BYC'사업장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사업장명		대표자명	
		담당자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업종	
종업원수		관할 환경청	
산업단지명		농공단지명	
유입수계명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명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명	
대기배출시설종류		수질배출시설종류	

2.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관·저장량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현황	보관·저장시설 위치	☐ 실내 ☐ 실외 ☐ 지하 ☑ 해당없음
	최대규모 범주	00
화학사고 발생현황	2010~2014 (0)	화학사고시 비상연락처

사업장의 일반정보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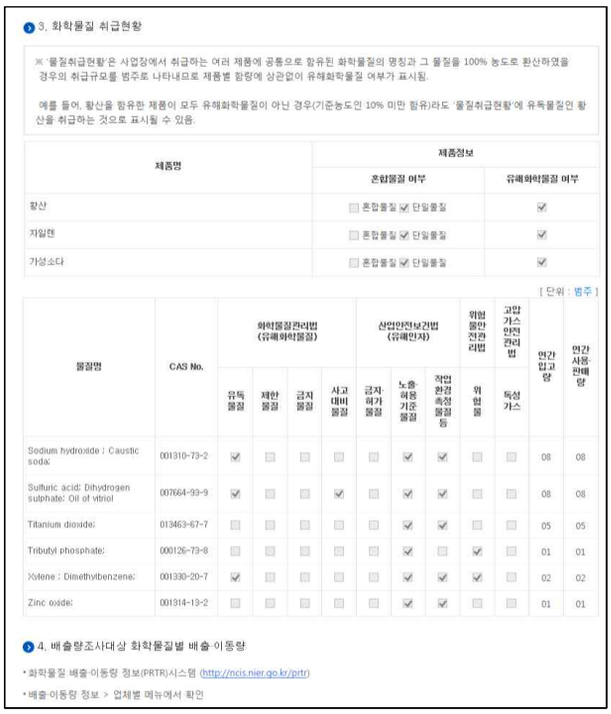

3. 화학물질 취급현황

※ '물질취급현황'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과 그 물질을 100% 농도로 환산하였을 경우의 취급규모를 범주로 나타내므로 제품별 함량에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 여부가 표시됨.

예를 들어, 황산을 함유한 제품이 모두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경우(기준농도인 10% 미만 함유)라도 '물질취급현황'에 유독물질인 황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될 수 있음.

제품명	제품정보	
	혼합물질 여부	유해화학물질 여부
황산	☐ 혼합물질 ☑ 단일물질	☑
자일렌	☐ 혼합물질 ☑ 단일물질	☑
가성소다	☐ 혼합물질 ☑ 단일물질	☑

[단위 : 범주]

물질명	CAS No.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인자)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연간 입고량	연간 사용·판매량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금지·허가물질	노출·허용기준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등	위험물	독성가스		
Sodium hydroxide ; Caustic soda;	001310-73-2	☑	☐	☐	☐	☐	☑	☑	☐	☐	08	08
Sulfuric acid; Dihydrogen sulphate; Oil of vitriol	007664-93-9	☑	☐	☐	☑	☐	☑	☑	☐	☐	08	08
Titanium dioxide;	013463-67-7	☐	☐	☐	☐	☐	☑	☑	☐	☐	05	05
Tributyl phosphate;	000126-73-8	☐	☐	☐	☐	☐	☑	☐	☑	☐	01	01
Xylene ; Dimethylbenzene;	001330-20-7	☑	☐	☐	☐	☐	☑	☑	☑	☐	02	02
Zinc oxide;	001314-13-2	☐	☐	☐	☐	☐	☑	☑	☐	☐	01	01

4.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이동량

•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PRTR)시스템 (http://ncis.nier.go.kr/prtr)

• 배출·이동량 정보 > 업체별 메뉴에서 확인

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배출현황

- 비공개 요청 절차
  - 화학물질 취급정보 중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와 첨부서류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심의신청서류 등에 대한 자료보호
  -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의신청서류 등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서류를 보호자료로 관리

    ※ 심의위원회에서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자료보호를 요청한 심의신청서류 등은 비공개

Ⅱ. 보고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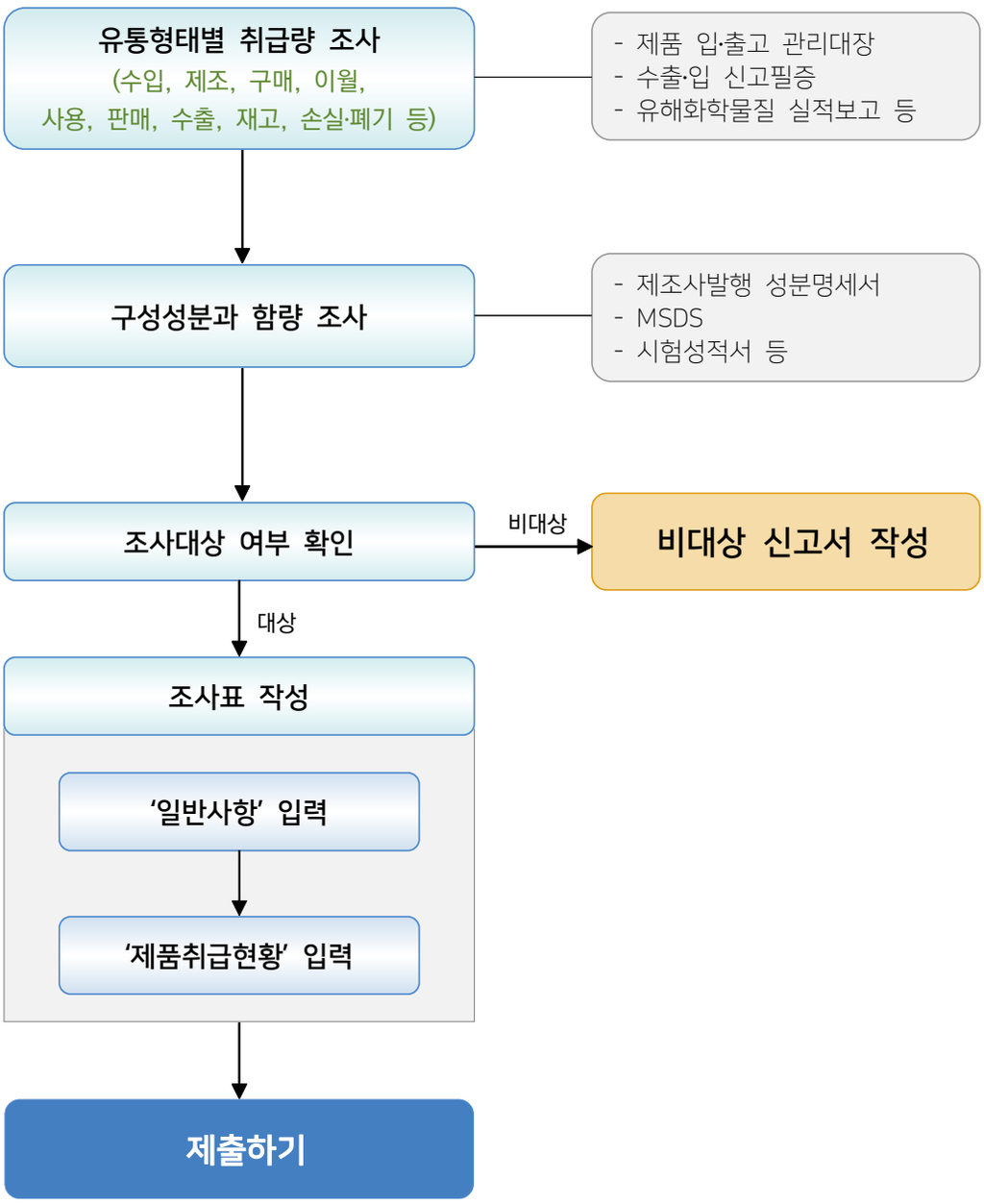
유통형태별 취급량 조사
(수입, 제조,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등)
- 제품 입·출고 관리대장
- 수출·입 신고필증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등
구성성분과 함량 조사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 MSDS
- 시험성적서 등
조사대상 여부 확인
비대상
비대상 신고서 작성
대상
조사표 작성
'일반사항' 입력
'제품취급현황' 입력
제출하기

Ⅲ. 조사대상 여부 확인

- 조사대상 사업장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제출)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사업장 또는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 조사대상 제외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제출)
  - 조사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사용(취급)하지 않는 경우
  -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별표] 기준 이하로 사용(취급)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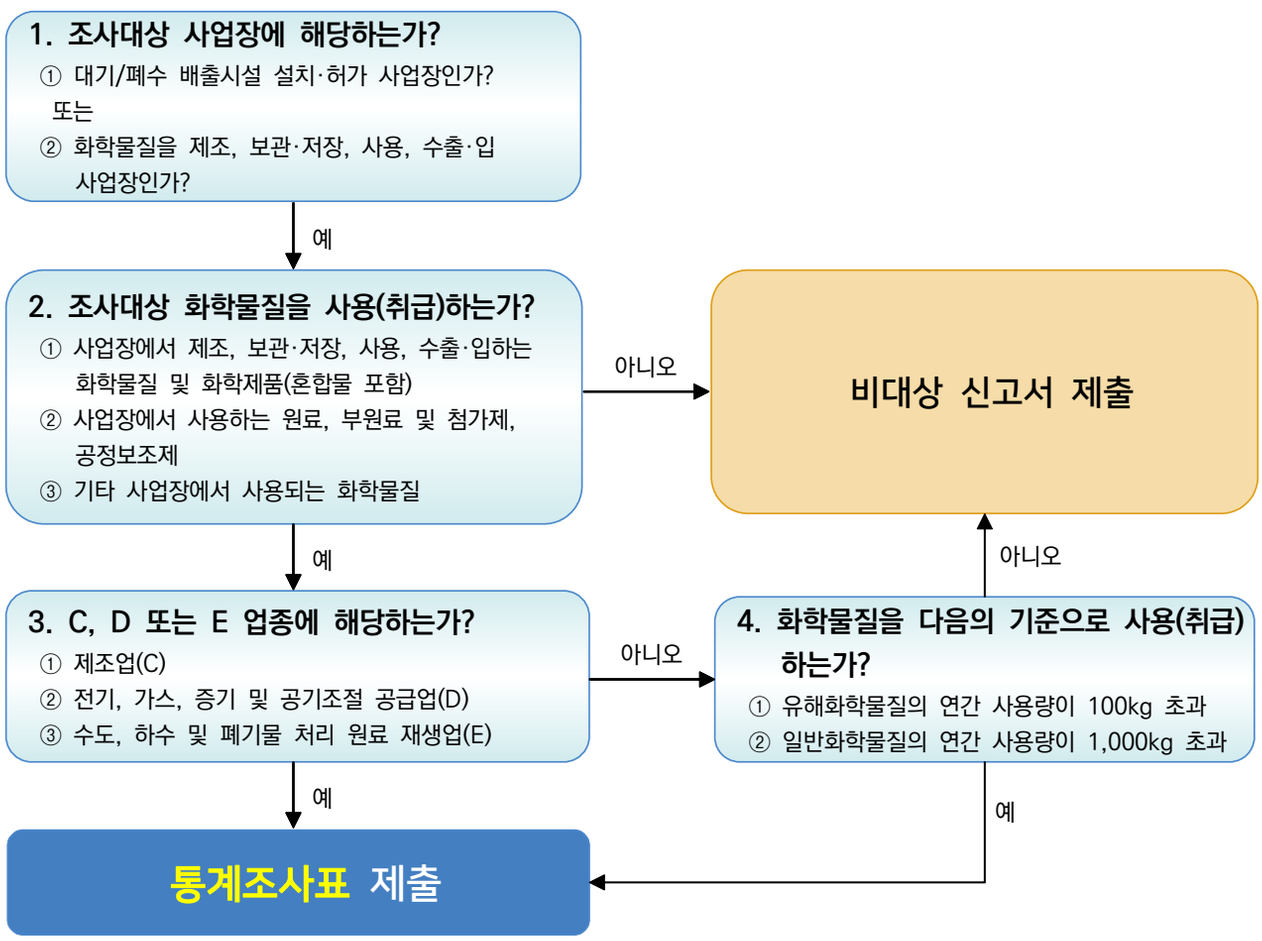

가. [별표]에 따른 C, D 또는 E 업종 조사대상 여부 확인 예시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번호	제품	입고량(Kg)	출고량(Kg)	구성성분		
				화학물질명	CAS No.	무게 함유율(%)
1	가	50	50	수산화나트륨	1310-73-2	30
				물	7732-18-5	70
2	나	10	10	아세트산 나트륨	127-09-3	40
				물	7732-18-5	70

- C, D 또는 E 업종은 화학물질 취급량에 상관없이 조사대상

나. [별표]에 따른 C, D 또는 E 외 업종 조사대상 여부 확인 예시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번호	제품	입고량 (Kg)	출고량 (Kg)	구성성분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조사대상
				화학물질명	CAS No.	무게 함유율(%)		
1	다	300	300	황산	7664-93-9	20	10	대상 (유해화학물질 100kg 초과)
				물	7732-18-5	80	-	
2	라	500	500	황산	7664-93-9	5	10	제외 (일반화학물질 1,000kg이하)
				물	7732-18-5	95	-	
3	마	1,200	1,200	황산	7664-93-9	8	10	대상 (일반화학물질 1,000kg초과)
				물	7732-18-5	92	-	
4	바	1,500	1,500	아세트산나트륨	127-09-3	20	-	대상 (일반화학물질 1,000kg초과)
				물	7732-18-5	80	-	
5	사	800	800	에틸알코올	64-17-5	30	-	제외 (일반화학물질 1,000kg이하)
				물	7732-18-5	70	-	

- "다"제품에 포함된 황산은 함유율이 10%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
  → 입고량이 100kg 초과로 조사대상
- "라"제품에 포함된 황산의 함유율이 10%미만으로 일반화학물질에 해당
  → 입고량이 1,000kg 이하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 "마"제품에 포함된 황산의 함유율이 10%미만으로 일반화학물질에 해당
  → 입고량이 1,000kg 초과로 조사대상
- "바"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아세트산나트륨은 일반화학물질에 해당
  → 입고량이 1,000kg 초과로 조사대상
- "사"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은 일반화학물질에 해당
  → 입고량이 1,000kg 이하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유해화학물질 확인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을 통해 검색이 가능함.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화관법 제2조제7호)

[참고] 제2차 통계조사 기준 유통량 상위 20개 유해화학물질 목록

번호	화학물질명(영문명)	화학물질명(국문명)	CAS No.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1	Benzene	벤젠	71-43-2	85
2	Toluene	톨루엔	108-88-3	85
3	1,3-Butadiene	1,3-부타디엔	106-99-0	0.1
4	Methyl alcohol	메틸알코올	67-56-1	85
5	Xylene(이성질체포함)	자일렌(이성질체 포함)	1330-20-7	85
6	Sodium hydroxide	수산화 나트륨	1310-73-2	5
7	Chlorine	염소	7782-50-5	25
8	1,2-Dichloroethane	1,2-이염화에탄	107-06-2	0.1
9	Hydrogen chloride	염산	7647-01-0	10
10	Vinyl chloride	염화비닐	75-01-4	0.1
11	Ammonia	암모니아	7664-41-7	10
12	Nitric acid	질산	7697-37-2	10
13	Sulfuric acid	황산	7664-93-9	10
14	Phenol	페놀	108-95-2	5
15	Phosgene	포스겐	75-44-5	1
16	Carbon monoxide	일산화탄소	630-08-0	25
17	2-Propenoic acid; Acrylic acid	아크릴산	79-10-7	25
18	Ethylene oxide	산화에틸렌	75-21-8	0.1
19	Lead	납	7439-92-1	0.06
20	Acrylonitrile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0.1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이용방법>

1단계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에 접속

2단계 Cas 번호 등 화학물질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

3단계 검색결과 Cas 번호, 물질명을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

4단계 '물질구분'항목에서 유해화학물질 여부 확인

5단계 '혼합물(제품) 함량정보'항목의 해당물질의 함량기준 확인

→ 함량기준(00% 이상 함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에 해당

→ 유해화학물질별 함량기준이 다른 경우 최소값 적용

제2장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작성 안내

Ⅰ. 조사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관할환경청, 산업·농공단지, 유입수계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정보는 이전에 보고실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통계조사시스템”에 이전의 업체정보가 자동기입되며, 신규가입 사업장의 경우 주소지 기준에 의해 기본값이 제공되므로 확인 후 변경·오류사항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사항>

작성일자 년 월 일

①	업체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④	소재지 주소					⑤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	[ ] 제조업 [ ] 사용업 [ ] 보관·저장 [ ] 판매업 [ ] 운반업 [ ] 없음	⑥	관할 환경청	
⑦	대표업종		⑧	종업원 수	명	⑨	연간 매출액	억원	⑩	부지 면적	m^2
⑪	산업단지		⑫	농공단지				⑬	유입수계명		
⑭	상수원 보호구역명		⑮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명	[ ] 팔당 Ⅰ권역 [ ] 팔당 Ⅱ권역 [ ] 대청 Ⅰ권역 [ ] 대청 Ⅱ권역 [ ] 해당 없음			⑯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명	[ ]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 [ ] 여천 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 해당 없음	
⑰	배출시설 종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종			폐수배출시설 ( )종			[ ] 해당 없음			
⑱	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위치 및 규모	2. 제품취급현황에 작성				⑲	비상 연락망	(부서명)		(전화번호)	
⑳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재 약품 보유 여부	[ ] 모래 [ ] 소석회 [ ] 가성소다 [ ] 탄산소다 [ ] 기타 ( )			방재 장비 보유 여부		[ ] 소화 장비 [ ] 개인보호구 [ ] 흡착포 [ ] 기타 ( )			
㉑	작성자 정보	부서명			직 위			이 름			
		전화번호	(직장) (휴대폰)		팩스번호			E-mail 주소			

※ 작성자 이름, 전화번호, E-mail이 잘못 기재되어, 통계조사표 검증, 화학물질정보공개 사전확인 등과

관련한 안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사업장에 있음

항 목	내 용
①업체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주소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내용을 기재**(주소의 경우 도로명 주소)** **(기존정보부여, 확인수정)** 관할환경청 정보는 입력된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해당
⑤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항에 따라 기재
⑥관할환경청	화학물질통계조사 관할을 기재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을 기재**(자동부여)**
⑦대표업종	사업장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국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업종을 선택**(검색가능)**
⑧종업원수	사무직과 기술직, 일용직을 포함한 사업장의 전체 인원수를 기재
⑨연간매출액	2018년도 매출액 입력
⑩부지면적	사업장의 총 부지면적을 기재 → 사무실만 있는 경우 사무실 면적 기재
⑪산업단지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내의 업소는 산업단지 분류번호표를 참고하여 해당 '산업단지명' 또는 '해당없음'을 기재 **(해당지역의 선택목록제시)**
⑫농공단지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업소는 농공단지 분류번호표를 참고하여 해당 '농공단지명' 또는 '해당없음'을 기재**(해당지역의 선택목록제시)**
⑬유입수계명	폐수방류 경로가 되는 인접수계를 유입수계 분류번호표를 참고하여 해당 '유입수계명' 또는 '해당없음' 기재**(해당지역의 선택목록제시)**
⑭상수원보호구역명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는 업소는 그 구역명을 기재**(해당지역의 선택목록제시)**
⑮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명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하는 업소는 해당 '권역에 표시' 또는 '해당없음'에 표시 **(해당지역의 선택목록제시)**
⑯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명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하는 업소는 해당란에 표시 또는 '해당없음'에 표시**(해당지역의 선택목록제시)**
⑰배출시설종류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상의 내용을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에 표시**(해당사항 선택)**
⑱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종류, 시설 위치 및 규모 기재 **(2. 제품취급현황에 작성)**
⑲비상연락망	화학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회사) 내의 부서와 비상연락망(전화번호) 기재
⑳화학 사고 예방·대응	사업장 내에 구비되어있는 방재약품 및 방재장비 기재
㉑작성자 정보	보고서의 작성자의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
제 출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공문을 받은 사업장이 조사대상범위(사업장, 취급량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품취급현황

- 사업장에서 제조·수입하는 화학제품,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의 화학제품, 기타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화학제품의 입·출고량을 기재
- 각 제품의 성분에 관한 정보는 “[붙임1]구성성분정보”에, 성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성분정보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붙임2] 성분보유자 정보”에 각 해당 내용을 기재

<2. 제품취급현황>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연 입고량(톤/년)				연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톤)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1			[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 제조 □ 수입 □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2			[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 제조 □ 수입 □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기타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 (폐수처리 약품, 냉각수 등)	3			[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 제조 □ 수입 □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	4			[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 제조 □ 수입 □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 구매, 판매량은 유상, 무상의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함

항 목	내 용
제품구분	-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 사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제품(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을 말하며, 완제품(article)은 제외함 -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 화학제품 또는 완제품(article)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부원료와 첨가제, 공정보조물질(촉매 등) - 기타 시설, 장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 : 폐수처리장에 사용하는 폐수 처리약품, 냉각수 등 -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 : 단순 보관·저장을 목적으로 위탁받은 제품을 말함
제품명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명이 있는 경우는 그 일반명을, 일반명이 없는 경우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상품명을 기재
용도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용도가 다양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용도를 기재. 55개로 분류된 "용도분류표"를 참조하고 해당용도가 분류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55번 용도를 선택하고, 상세용도를 직접 기재 - 예시 : 정전기 발생을 방지 또는 저감하는데 사용한 경우 "7번 정전기 방지제"로 기재
제품구성	각 제품이 구성이 단일 물질인지 혼합 물질인지 표시 - 단일물질 :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이 1개인 화학물질 - 혼합물질 :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이 2개 이상인 화학물질 (단, 수용액상태의 물질은 단일물질로 표시)
제품형태	각 제품이 고체, 액체, 기체의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18년 입고량	- 단위 : 킬로그램(kg), 톤(ton) 단위 중 해당되는 단위로 기재 - 제조량 : 사업장에서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을 제조한 양 - 수입량 : 외국으로부터 귀사가 직접 수입한 양 - 구매량 : 수입업자나 국내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양 (유상, 무상 모두 대상) - 이월량 : 2017년 재고량으로 2018년으로 이월된 양
'18년 출고량	- 사용량 : 화학제품의 제조, 생산을 위하여 원료, 부원료, 첨가제 등 공정에 사용하였거나, 기타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된 양 - 판매량 : 2018년에 국내에 판매한 양 (유상, 무상 모두 대상) - 수출량 : 2018년에 국외로 수출한 양 - 재고량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고량 - 손실/폐기량 : 구입이나 제조 후 불량품(규격 이외 제품, 함량미달, 오염 및 변성 등)등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한 양 또는 사용 전 보관, 저장, 운반 중 사고로 인하여 누출된 양 (입·출고량에 따라 자동 산정)

항 목	내 용
나노물질 포함	화학제품 중 나노물질이 포함된 경우 표시 - 제조(국내에서 의도적으로 나노물질을 제조한 경우), 수입(제품팜플렛 등에 나노물질임을 명시한 물질을 수입한 경우), 해당없음(나노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모름(나노물질 포함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중 선택 ※ "나노물질"이란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 동일 제품이 제조, 수입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다중 선택 가능
취급 현황	제품별 취급시설 유무 선택 및 최대 보관·저장량(톤) 기재 - 보관·저장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기재 ※ 동일 제품을 보관, 저장시설 모두 이용하여 취급하는 경우 다중 선택 가능

<단위 환산 방법>

입력단위	변경 방법	환산단위
ton	변경 없음	ton
kg	× 0.001	
L	× 비중 × 0.001	
㎥	× 비중	
gal	× 비중 × 0.00379	

* 부피단위(L, ㎥, gal)의 경우 각 제품별 비중 및 환산계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주의하여 입력할 것

<용도분류표>

※ 화평법 시행령 [별표 2]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9조제2호 관련)에 의함

용도분류	구체적 내용
1. 흡수 및 흡착제 (Absorbents and Adsorbents)	가스나 액체를 흡수 또는 흡착하는 물질
2. 접착제/결합제 (Adhesive, Binding agents)	두 물체의 접촉면을 접합시키는 물질 또는 두 개의 개체를 결합시키는 물질
3. 에어로졸추진제 (Aerosol propellants)	압축가스 또는 액화 가스로서 용기에서 가스를 분사함으로써 내용물을 분출시키는 물질
4. 응축방지제 (Anti-condensation agents)	물체의 표면에서 액체가 응축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5. 부동액 (Anti-freezing agents)	냉각에 의해서 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액체
6. 접착방지제 (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두 개체 접촉면의 접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7. 정전기 방지제 (Anti-static agents)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물질
8. 표백제 (Bleaching agents)	섬유 등 착색물체의 색깔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제거함으로써 백색·무색으로 하는 물질
9. 세정 및 세척제 (Cleaning/ Washing agents)	표면에 오염물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10. 착색제 (Colouring agents)	다른 물질에 발색하도록 하는 물질
11. 착화(錯化)제 (Complexing agents)	주로 중금속 이온인 다른 물질에 배위자(配位子)로서 배위되어 착물(복합체)을 형성하는 물질
12. 전도제 (Conductive agents)	섬유류와 플라스틱류의 대전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조공정에서 첨가·도포하는 물질
13. 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 (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건축용 자재에 사용하는 물질
14. 부식방지제 (Corrosion inhibitors)	공기를 비롯한 화학물질, 옥외노출 등으로 생기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

용도분류	구체적 내용
15. 화장품 (Cosmetics)	화장품 및 세면용품에 사용하는 물질
16. 분진결합제 (Dust binding agents)	분진의 발생·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
17. 전기도금제 (Electroplating agents)	금속표면의 세척 및 세정을 위해서 쓰이는 물질 및 도금공정에서 도금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
18. 화약, 폭발물 (Explosives)	화학적 안전성을 지녔으나 화학적 변화를 거침으로써 폭발 또는 팽창을 동반한 다량의 에너지 및 가스를 매우 빠르게 발생시키는 물질
19. 비료 (Fertilizers)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20. 충전제 (Fillers)	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세라믹 등에 광택, 인장, 발색 등 기능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
21. 정착제 (Fixing agents)	섬유의 염료와 반응하여 색이 정착하도록 하는 물질
22. 내화/방연제 및 난연제 (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	주로 섬유 및 플라스틱의 연소 방지·지연효과를 위해서 작업공정 중에 첨가·반응시키는 물질
23. 부유제 (Flotation agents)	광물질의 제련공정 중에서 광물질을 농축·수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
24. 주물용 융(融)제 (Flux agents for casting)	광물질을 녹이는 공정에서 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
25. 발포제/기포제 (Foaming agents)	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에 첨가해서 작업공정 중 가스를 발생시켜 기포를 형성케 하는 물질
26. 식품 및 식품첨가물 (Food/ Foodstuff additives)	식품(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 및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첨가하는 물질
27. 연료 (Fuel)	연소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
28. 연료첨가제 (Fuel additives)	연소효율,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료에 첨가하는 물질

용도분류	구체적 내용
29. 열전달제 (Heat transferring agents)	열을 전달하고 열을 제거하는 물질
30. 유압유 및 첨가제 (Hydraulic fluids and additives)	각종 압축기에 넣는 액체(기름) 및 압력 전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
31. 함침(含浸)제 (Impregnation agents)	가공성제품의 품질향상, 형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재에 미리 처리하여 놓는 물질
32. 절연제 (Insulating materials)	전기기기에 있어서 도체 이외의 부분을 전류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물질
33. 중간체 (Intermediates)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34. 실험실용 물질 (Laboratory chemicals)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물질
35. 윤활유 및 첨가제 (Lubricants and additives)	두 표면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투입하는 물질
36. 비농업용 농약 및 소독제 (Non- agricultural pesticides and Disinfectants)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물질 (단, 농약, 의약(외)품이나 수의학(외)품은 제외)
37. 향료 (Odor agents)	향을 내는 물질
38. 산화제 (Oxidizing agents)	특수한 조건에서 산소를 쉽게 발생하여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거나, 수소를 제거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물질
39.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	수소이온농도(pH)를 조절하거나 안정화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40. 농약 (Pesticides)	농작물을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 그 밖의 병해충으로부터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단, 비료는 제외)
41. 의약품 (Pharmaceuticals)	(동물)의약품 및 (동물)의약외품의 활성성분
42. 사진현상재료 등 광화학물 (Photochemicals)	영구적인 사진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물질

용도분류	구체적 내용
43. 공정속도조절제 (Process regulators)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정속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44. 환원제 (Reducing agents)	주어진 조건에서 산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
45. 복사용 물질 (Reprographic agents)	전자복사기 등에 쓰여 영구적인 이미지 생성에 사용하는 물질
46. 반도체용 물질 (Semiconductors)	규소단결정체처럼 절연체와 금속의 중간 정도의 전기저항을 갖는 물질로서, 빛, 열 또는 전자기장에 의해서 기전력을 발생하는 물질
47. 연화제 (Softners)	일반적으로 직물, 가죽, 종이 등을 부드럽게 하거나 고무 등의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합해 쓰는 가교결합약제 등의 물질
48. 용제 (Solvents)	녹이거나 희석시키거나 추출, 탈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
49. 안정제 (Stabilizers)	제조공정이나 사용 중에 열, 빛, 산소, 오존 등에 의해서 열화가 일어나 모양, 색깔, 물성이 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50. 계면활성제/표면활성제 (Surface-active agents)	한 분자 내에 친수기와 소수기를 지닌 화합물로, 액체의 표면에 부착해서 표면장력을 크게 저하시켜 활성화 해주는 물질
51. 탄닌제 (Tanning agents)	탄닝제, 가죽마감제, 가죽케어 등 가죽 처리 물질
52. 점도조정제 (Viscosity adjusters)	수지 등 고분자화합물을 용해한 점성재료의 농도를 안정화시켜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는 물질
53. 가황(加黃)제/가황촉진제 (Vulcanizing agents)	고무와 같은 화합물에 가교반응을 일으켜 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단단하게 하는 물질
54. 용접제 (Welding and Soldering agents)	금속류의 용접 및 납땜질을 할 때 사용하는 물질
55. 기타 (Others)	

[붙임 1] 구성성분정보

-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각 제품별로 작성하며, 구성성분은 모두 기재
- 제품의 공급자가 성분명세서 등을 제공하지 않아서 구성성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성분명세서 보유자의 인적사항을 “[붙임2]성분보유자 정보” 서식에 기재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작 성 근 거	일련번호	구 성 성 분			제조구분
				물 질 명	CAS No.	순도 또는 함량(%)	
1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 ]MSDS [ ]시험성적서 [ ]기타 [ ]자료없음	1-1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1-2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2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 ]MSDS [ ]시험성적서 [ ]기타 [ ]자료없음	2-1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2-2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3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 ]MSDS [ ]시험성적서 [ ]기타 [ ]자료없음	3-1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3-2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 “순도 또는 함량(%)”은 중량비(%)를 의미함

※ “합성” :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서로 화학반응을 하여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성된 경우
(예 : A + B → C)

※ “분리·정제” : 혼합물에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특정한 물질을 얻는 것
(예 : 원유에서 Benzene, Toluene, Xylene 등을 얻는 것)

※ “추출” :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 속에서 특정한 물질을 용해할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하여 성분을 분리해내는 것

※ “혼합” :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서로 화학반응하지 않고 단순히 성분 비율만 변경된 경우
(예 : A + B → A + B)

항 목	내 용
일련번호와 제품명	“2. 제품취급현황”의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
작성근거	성분정보를 작성한 근거서류(성분내역이 나타나 있는 서류)의 종류를 표시 - 제품의 공급자로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하여 구성성분정보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없음”에 체크한 후 “[붙임2]성분보유자 정보”를 기재 ※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에 따라 성분정보를 작성하는 방법 1. 성분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성분 및 함량에 따라 작성하되 확인서(LOC; Letter of Confirmation)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유해화학물질 정보만 입력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붙임2]성분보유자 정보”를 입력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MSDS 3번 항목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하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경우 제조사에 요청하여 작성하고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받지 못한 경우는 “[붙임2]성분보유자 정보”를 입력 3.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분 및 함량정보 작성 4. 자료가 없는 경우 - 성분 및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조사로부터 받지 못해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붙임2] 성분보유자 정보”를 입력
물질명	화학물질명 기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명법에 따른 화학물질명
CAS No.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기재(검색가능)
순도 및 함량(%)	구성성분별 함량을 모두 기재(함량 100%)
제조구분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해당 성분이 “합성, 분리·정제, 추출”에 의한 것인지, “혼합, 기타”에 의한 것인지를 표시

※ CAS No. 또는 고유번호를 모르는 경우

1. 화학물질을 구입한 제조사 또는 공급자에게 확인
2. 정확한 화학물질명으로 CAS No.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곳
   - 국내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안전보건공단 MSDS/GHS(http://msds.kosha.or.kr)
   - 외국 : 유럽(http://echa.europa.eu), 미국(http://toxnet.nlm.nih.gov),
     일본(http://www.safe.nite.go.jp), STN/유료(http://stnweb.cas.org)
3. 화학물질명을 정확히 알고 있으나 CAS No.가 없는 화학물질의 입력방법
   - 고유번호를 “-”를 포함하여 입력하고 정확한 화학물질명을 오타가 없도록 “물질명”란에 기재

※ 순도 및 함량(%)을 범위로 알고 있는 경우

1. 최대함량만을 알고 있다면, 최대값을 기재
   - Sodium hydroxide 5% 이하 (〈 5%) ⇒ 최대값 5% 기재
2. 함량이 범위로 나타나 있는 경우 성분함량을 고려하여 100%기재를 원칙
   다만, 함량범위를 고려하여 중간값 입력을 허용함
   -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의 함량은 최대값으로 입력
     ⇒ Benzene 50~60% ⇒ 최대값 60% 기재
3. 최소함량만을 알고 있는 경우 최소값을 기재

Citric acid 5% (〉5%) 이상 ⇒ 최소값 5% 기재

4. 여러 성분 중 하나의 성분이 최소함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성분의 함량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성분과 그 함량의 합이 100% 기재를 원칙
   - "물 10%, acetamide 10%, Citric acid 60% 이상"인 경우
     ⇒ "물10%, acetamide 10%, Citric acid 80%"

[붙임 2] 성분보유자정보

- 수입 또는 구매하였으나 성분내역을 제공받지 못하여 "[붙임1]구성성분정보"의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실제 성분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상호, 담당자 및 그 연락처 등 성분보유자 정보를 기재
- 구성성분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보유자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성분정보 확인 및 유통현황 조사 실시

일련번호	제 품 명 (상품명)	성 분 명 세 서 보 유 자							미기재 사유 (1)~(3)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1									
2									
3									

항 목	내 용
일련번호와 제품명	“2. 제품취급현황”의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를 그대로 기재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성분명세서를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
미기재사유	아래의 사유 중 1가지를 선택 (1) 국내 제3자가 성분명세서를 보유한 경우 (2) 제품 중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비(함유량,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제조사로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작성예시

제품의 유통흐름이 단순한 경우(단일제품)

〈예시 1〉

☞ A제품(혼합물질, 나노물질 포함, 액체)은 페인트 착색제로 제조되어 수출하고 잔량은 창고에 저장(재고)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18년 입고량(톤/년)				'18년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톤)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1	A	착색제	[ ] [V]	단일물질 혼합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100						80	2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o]	[ ]	100
																	저장시설(탱크)	[ ]	[x]	-
																	제조·사용시설	[o]	[ ]	-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2			[ ] [ ]	단일물질 혼합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기타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 (폐수처리 약품, 냉각수 등)	3			[ ] [ ]	단일물질 혼합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	4			[ ] [ ]	단일물질 혼합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 보관· 저장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최대 보관저장량"은 합산하여 기재하고, [제조 사용시설]의 경우 해당여부만 표시하고 "최대 보관저장량"은 생략

〈예시 2〉

☞ B제품(단일물질, 액체)은 방수섬유 함침제로 수입되어 사용하고 잔량은 창고에 보관(재고)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18년 입고량(톤/년)				'18년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톤)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1	B	함침제	[V]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100			90			1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o]	[ ]	100
																	저장시설(탱크)	[ ]	[x]	-
																	제조·사용시설	[o]	[ ]	-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2			[ ]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기타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 (폐수처리 약품, 냉각수 등)	3			[ ]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	4			[ ]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예시 3〉

☞ C제품(혼합물질, 고체)은 타이어 충전제 원료로 구매(국내)하여 창고에 보관되어 사용 및 판매(국내), 일부 폐기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18년 입고량(톤/년)				'18년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톤)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1			[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 제조 □ 수입 □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2	C	충전제	[ ]	단일물질	[V]고체 [ ]액체 [ ]기체			100	10	70	35			5	□ 제조 □ 수입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o]	[ ]	100
				[V]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 ]	[x]	-
																	제조·사용시설	[o]	[ ]	-
기타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 (폐수처리 약품, 냉각수 등)	3			[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 제조 □ 수입 □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	4			[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 제조 □ 수입 □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예시 4〉

☞ D제품(단일물질, 액체)은 폐수처리장의 응집제로 구매(국내)하여 사용하고 잔량은 탱크에 저장(재고)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18년 입고량(톤/년)				'18년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톤)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1			[ ] [ ]	단일물질 혼합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 제조 □ 수입 □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2			[ ] [ ]	단일물질 혼합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 제조 □ 수입 □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기타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 (폐수처리 약품, 냉각수 등)	3	D	기타	[V] [ ]	단일물질 혼합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50	10	55			5		□ 제조 □ 수입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저장시설(탱크)	[o]	[ ]	10
																	제조·사용시설	[o]	[ ]	-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	4			[ ] [ ]	단일물질 혼합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 제조 □ 수입 □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예시 5〉

☞ E제품(단일물질, 액체)은 유기용제제품으로 국내에서 (유상)위탁받아 전량 창고에 보관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18년 입고량(톤/년)				'18년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톤)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1			[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 제조 □ 수입 □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2			[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 제조 □ 수입 □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기타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 (폐수처리 약품, 냉각수 등)	3			[ ]	단일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 제조 □ 수입 □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	4	E	용제	[V]	단일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100					100		□ 제조 □ 수입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o]	[ ]	100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 ]	[x]	-
																	제조·사용시설	[ ]	[x]	-

제품의 유통흐름이 단순한 경우(복수제품)

〈예시 1〉 **수입** 또는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수출** 또는 **판매**하는 사업장

제품명	용도	취급형태
A(혼합, 액체)	전도제	**제조**하여 **사용, 판매** / 잔량은 탱크에 저장(재고)
B(혼합, 고체)	절연제	**수입**하여 **사용, 판매** / 잔량은 창고에 저장(재고)
C(혼합, 액체)	향료	**구매**하여 **사용, 수출** / 탱크에 저장
D(단일, 기체)	발포제/기포제	**구매**하여 **판매, 수출** / 탱크에 저장
E(단일, 액체)	유압유	**구매**하여 **사용, 판매, 수출** / 저장시설에 저장
F(단일, 고체)	접착방지제	(유상)**위탁**받음 / 창고에 보관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18년 입고량(톤/년)				'18년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톤)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1	A	전도제	[ ] [V]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100				70	25		5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저장시설(탱크)	[o]	[ ]	10
																	제조·사용시설	[o]	[ ]	-
	2	B	절연제	[V]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V]고체 [ ]액체 [ ]기체		100			70	20		1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o]	[ ]	50
																	저장시설(탱크)	[ ]	[x]	-
																	제조·사용시설	[o]	[ ]	-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3	C	향료	[ ] [V]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100	10	30		79		1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저장시설(탱크)	[o]	[ ]	50
																	제조·사용시설	[o]	[ ]	-
	4	D	발포제/기포제	[V]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 ]액체 [V]기체			100			90	1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저장시설(탱크)	[o]	[ ]	100
																	제조·사용시설	[ ]	[x]	-
기타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 (폐수처리 약품, 냉각수 등)	5	E	유압유	[V]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70	10	50	20	5	5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저장시설(탱크)	[o]	[ ]	100
																	제조·사용시설	[o]	[ ]	-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	6	F	접착 방지제	[V]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V]고체 [ ]액체 [ ]기체			100	20				12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o]	[ ]	100
																	저장시설(탱크)	[ ]	[x]	-
																	제조·사용시설	[ ]	[x]	-

제품의 유통흐름이 복잡한 경우

〈예시 1〉 혼합 제조하여 수출 또는 판매하는 사업장

제품명	용도	취급형태
A(혼합, 액체)	안정제	**구매**하여 **사용, 판매** / 탱크에 저장
B(단일, 고체)	중간체	**구매**하여 **사용** / 창고에 보관
C(단일, 액체)	정착제	**이월**하여 **사용** / 탱크에 저장
AB(혼합, 액체)	접착제	**제조**되어 **사용, 판매** / 탱크에 저장
ABC(혼합, 고체)	착화제	**제조**되어 **수출, 판매** / 창고에 보관
D(단일, 액체)	기타	**구매**하여 **사용** / 창고에 보관
E(단일, 액체)	기타	(유상)**위탁**받음 / 창고에 보관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18년 입고량(톤/년)				'18년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톤)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1	AB	접착제	[ ] [V]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100				70	25		5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저장시설(탱크)	[o]	[ ]	50
																	제조·사용시설	[o]	[ ]	-
	2	ABC	착화제	[ ] [V]	단일 물질 혼합 물질	[V]고체 [ ]액체 [ ]기체	75					50	15	1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o]	[ ]	50
																	저장시설(탱크)	[ ]	[x]	-
																	제조·사용시설	[o]	[ ]	-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3	A	안정제	[ ] [V]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50		40	1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저장시설(탱크)	[o]	[ ]	50
																	제조·사용시설	[o]	[ ]	-
	4	B	중간체	[V]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V]고체 [ ]액체 [ ]기체			65		60			5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o]	[ ]	50
																	저장시설(탱크)	[ ]	[x]	-
																	제조·사용시설	[o]	[ ]	-
	5	C	정착제	[V]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5	5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저장시설(탱크)	[o]	[ ]	10
																	제조·사용시설	[o]	[ ]	-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18년 입고량(톤/년)				'18년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톤)
기타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 (폐수처리 약품, 냉각수 등)	6	D	기타	[V]	단일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5		4			0.9	0.1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o]	[ ]	1
				[ ]	혼합 물질												저장시설(탱크)	[ ]	[x]	-
																	제조·사용시설	[o]	[ ]	-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	7	E	기타	[V]	단일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1					1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o]	[ ]	1
				[ ]	혼합 물질												저장시설(탱크)	[ ]	[x]	-
																	제조·사용시설	[ ]	[x]	-

〈예시 2〉 합성제조하여 제품을 수출 또는 판매하는 사업장

제품명	용도	취급형태
A(단일, 액체)	점도조정제	**구매**하여 **사용, 판매** / 탱크에 저장
B(단일, 고체)	연화제	**제조**되어 **사용, 수출** / 창고에 보관
C(단일, 액체)	정착제	**수입**하여 **사용** / 탱크에 저장
AB(혼합, 액체)	용제	**제조**되어 **사용, 수출** / 탱크에 저장
ABC(단일, 액체)	접착제	**제조**되어 **수출, 판매** / 탱크에 저장
D(단일, 액체)	기타	**구매**하여 **사용** / 창고에 보관
E(단일, 액체)	실험실용 물질	(유상)**위탁**받음 / 창고에 보관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18년 입고량(톤/년)				'18년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톤)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1	AB	용제	[ ] [V]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80				30		5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저장시설(탱크)	[o]	[ ]	50
																	제조·사용시설	[o]	[ ]	-
	2	ABC	접착제	[V]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80					50	20	1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저장시설(탱크)	[o]	[ ]	50
																	제조·사용시설	[o]	[ ]	-
	3	C	정착제	[V]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100			50			5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저장시설(탱크)	[o]	[ ]	50
																	제조·사용시설	[o]	[ ]	-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4	A	점도 조정제	[V]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50		40	1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저장시설(탱크)	[o]	[ ]	50
																	제조·사용시설	[o]	[ ]	-
	5	B	연화제	[V]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V]고체 [ ]액체 [ ]기체			45		40		5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o]	[ ]	50
																	저장시설(탱크)	[ ]	[x]	-
																	제조·사용시설	[o]	[ ]	-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18년 입고량(톤/년)				'18년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톤)
기타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 (폐수처리 약품, 냉각수 등)	6	D	기타	[V]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5		4			0.9	0.1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저장시설(탱크)	[o]	[ ]	10
																	제조·사용시설	[o]	[ ]	-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	7	E	실험실용 물질	[V] [ ]	단일 물질 혼합 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1					1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o]	[ ]	10
																	저장시설(탱크)	[ ]	[x]	-
																	제조·사용시설	[ ]	[x]	-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작성예시

〈예시 1〉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 또는 냉각소로 사용하는 경우

☞ A제품(코크스, 단일물질, 고체)은 수입 후 창고에 보관되어 용광로 연료로 사용

☞ B제품(냉각수, 단일물질, 액체)은 제조 후 탱크에 저장되어 냉각탑의 냉각수로 사용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18년 입고량(톤/년)				'18년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톤)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1	A	연료	[V]	단일물질	[V]고체 [ ]액체 [ ]기체		20		10	20			1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o]	[ ]	50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 ]	[x]	-
																	제조·사용시설	[o]	[ ]	-
	2	B	기타	[V]	단일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80				70			1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o]	[ ]	100
																	제조·사용시설	[o]	[ ]	-

〈예시 2〉 보관·저장시설 현황 작성 예시

☞ A제품(PVC, 단일물질, 고체)은 수입 후 탱크 및 창고 모두 보관

☞ B제품(착화제, 혼합물질, 액체)은 제조 후 탱크에 나눠서 보관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18년 입고량(톤/년)				'18년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톤)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1	A	기타	[V]	단일물질	[V]고체 [ ]액체 [ ]기체		20		10	20			1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o]	[ ]	100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o]	[ ]	50
																	제조·사용시설	[ ]	[x]	-
	2	B	착화제	[ ]	단일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80				70			10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V]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o]	[ ]	50
																	제조·사용시설	[o]	[ ]	-

〈예시 3〉 단위환산이 필요한 예시 (지침서 p.21 단위 환산 방법 참조)

☞ A제품(메탄올, 단일물질, 액체, 용제, 탱크저장)은 비중 0.8의 메탄올이며 5,000L를 수입하여 사용

⇒ 단위환산(톤): 취급량 × 비중 × 0.001 = 5,000L × 0.8 × 0.001 = 4톤

☞ B제품(암모니아수, 단일물질, 액체, pH 조절제, 탱크저장)은 비중 0.9의 암모니아수이며 900gal을 제조

⇒ 단위환산(톤): 취급량 × 비중 × 0.00379 = 900gal × 0.9 × 0.00379 = 3.1톤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품명(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18년 입고량(톤/년)				'18년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톤)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1	A	용제	[V]	단일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4		1	4			1		□ 제조 □ 수입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o]	[ ]	5
																	제조·사용시설	[o]	[ ]	-
	2	B	pH 조절제	[V]	단일물질	[ ]고체 [V]액체 [ ]기체	3.1				3.1					□ 제조 □ 수입 ■해당없음 □ 모름	보관시설(창고)	[ ]	[x]	-
				[ ]	혼합물질												저장시설(탱크)	[o]	[ ]	5
																	제조·사용시설	[o]	[ ]	-

3 비대상 신고서

- 사업장이 조사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조사대상 기준이 아닌 사유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자료 함께 제출
- 면제 사유를 제외한 신청인 및 신고사항 정보는 기본값이 “통계조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의 현황 확인 후 변경·오류사항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 제조업 [ ] 사용업 [ ]보관·저장업 [ ] 판매업 [ ] 운반업 [ ] 없음	관할 환경청	
			대표업종	
			종업원 수	
	연간 매출액		부지면적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상수원보호구역명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 ] 팔당 I권역 [ ] 팔당 II권역 [ ] 대청 I권역 [ ] 대청 II권역 [ ] 해당 없음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명	[ ]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 [ ] 여천 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 해당 없음
	배출시설종류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종 [ ] 폐수배출시설 ( )종 [ ] 해당 없음		
	면제 사유	[ ] 별표의 기준량 미만 취급 [ ]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음 [ ] 기타 (폐업, 휴업 등)		

제3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사용 매뉴얼

Ⅰ.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소개 및 구성

1 시스템 소개

- 통계조사 보고시스템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조사 조사대상 업체가 화학물질의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등의 유통현황 정보를 조사한 통계조사결과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이다.
- 조사대상 업체는 통계조사 조사표 서식을 참고하여, 본 시스템의 사용매뉴얼에 따라 “일반사항”과 “제품취급현황”을 입력하고 저장함으로써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시스템에는 업체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화학물질과 CAS번호 검색”, “우편번호검색(도로명주소)”이 가능하고, “산업단지명, 농공단지명”은 주소지에 따라 선택지가 제공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이전에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화학물질수입 등의 보고, 신고를 한 업체의 기본정보(상호, 주소 등)가 입력되어 있어 기본정보입력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주소지의 경우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필히 주소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수정하여야 한다.

〈그림 1〉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메인화면

2 시스템 구성

- 통계조사 보고시스템은 통계조사개요, 통계조사방법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통계조사 개요
  나) 통계조사 방법
  다) 통계조사 보고
  라) 동영상 교육자료
  마) 참여마당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구성 항목>

메 뉴		비 고
통계조사 개요	목적	목적 및 배경 정보 제공
	법적근거	근거 법령 정보 제공
	조사범위	조사범위(조사대상사업장, 물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통계조사 방법	조사대상여부확인	조사대상 여부확인 방법 제공
	조사체계 및 흐름	조사체계 및 흐름도 제공
	조사절차	기업의 통계조사 조사절차 소개
통계조사 보고	입력자정보	보고시스템 가입자 정보
	일반사항	조사대상 업체정보
	제출구분확인	조사대상 여부 확인
	비대상신고서	비대상신고서 작성(비대상 사유 입력)
	제품 및 물질 취급현황	조사대상 제품 및 물질 취급현황 작성
	제출완료	조사표 제출완료 및 수정요청
동영상교육자료	동영상교육자료	보고시스템 이용안내 및 조사표 작성방법
참여마당	공지사항	통계조사 관련 공지사항 제공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정보 제공
	문의처	문의처 및 관련 기관 사이트 정보 제공
	자료실	통계조사 관련 자료 제공

Ⅱ.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이용방법

- 통계조사 보고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보고시스템 접속 → 시스템 가입 → 통계조사보고서 제출로 구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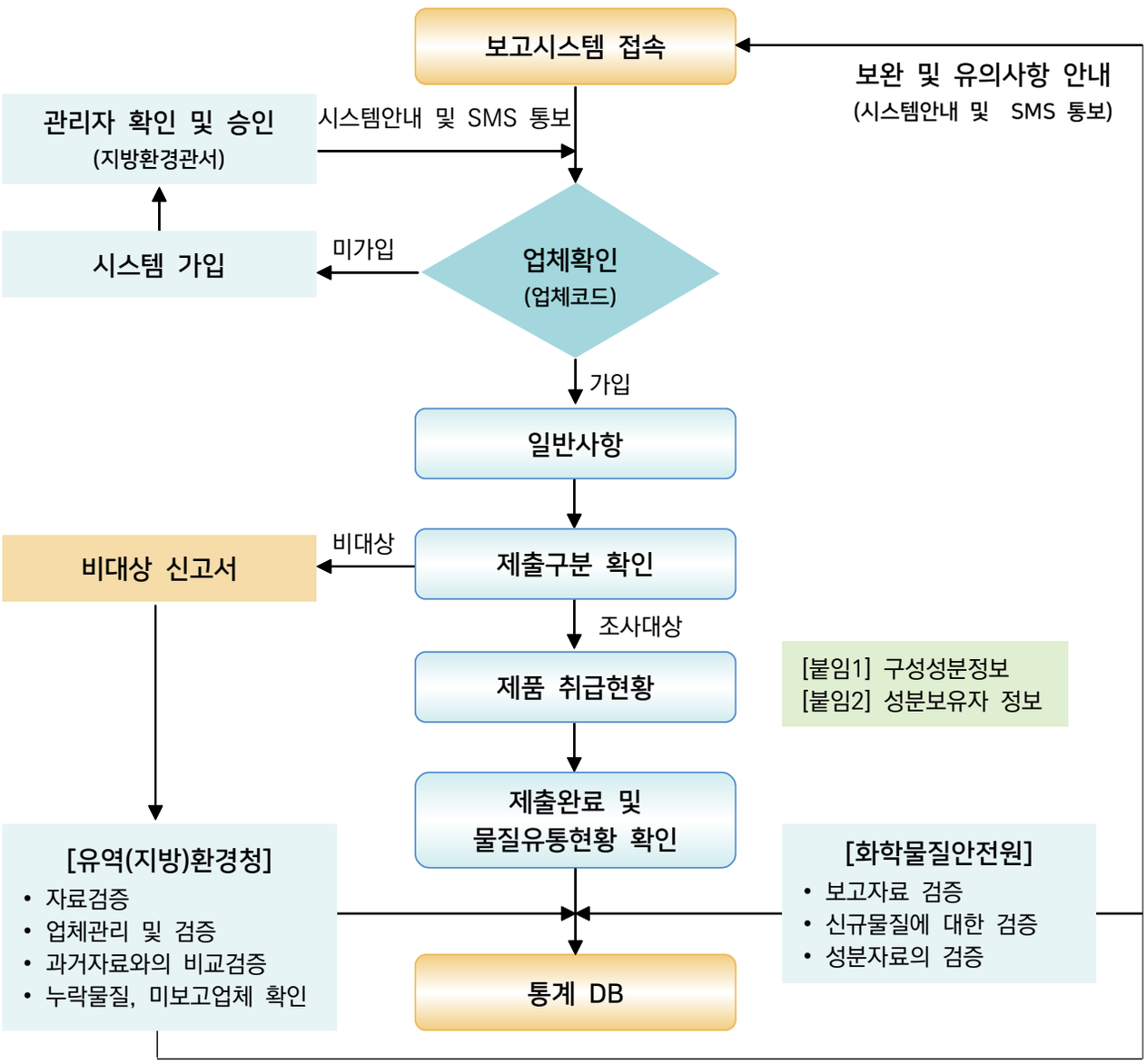

〈그림 2〉 통계조사시스템 흐름 개요도

1 시스템 접속하기

- 인터넷 주소창에 화학물질 통계조사 웹사이트(http://www.narastat.kr/chemdata2019) 주소를 입력하여 통계조사 보고시스템에 접속한다.
  ※ 통계조사 시스템은 Google의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반드시 사용해야함

〈그림 3〉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접속하기

- 나라통계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http://www.narastat.kr)
  1) 구글,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사이트에서『나라통계』검색 후, 검색 결과 내 나라통계 사이트 접속한다.

〈그림 4〉 나라통계 사이트 검색화면

  2) 나라통계 사이트에서『진행중인 통계조사』클릭한다.

〈그림 5〉 나라통계 사이트 접속화면

2) 조사명 공란에『화학물질통계조사』검색 후, 검색 결과 내『인터넷』버튼을 클릭하여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시스템(http://www.narastat.kr/chemdata2019)에 접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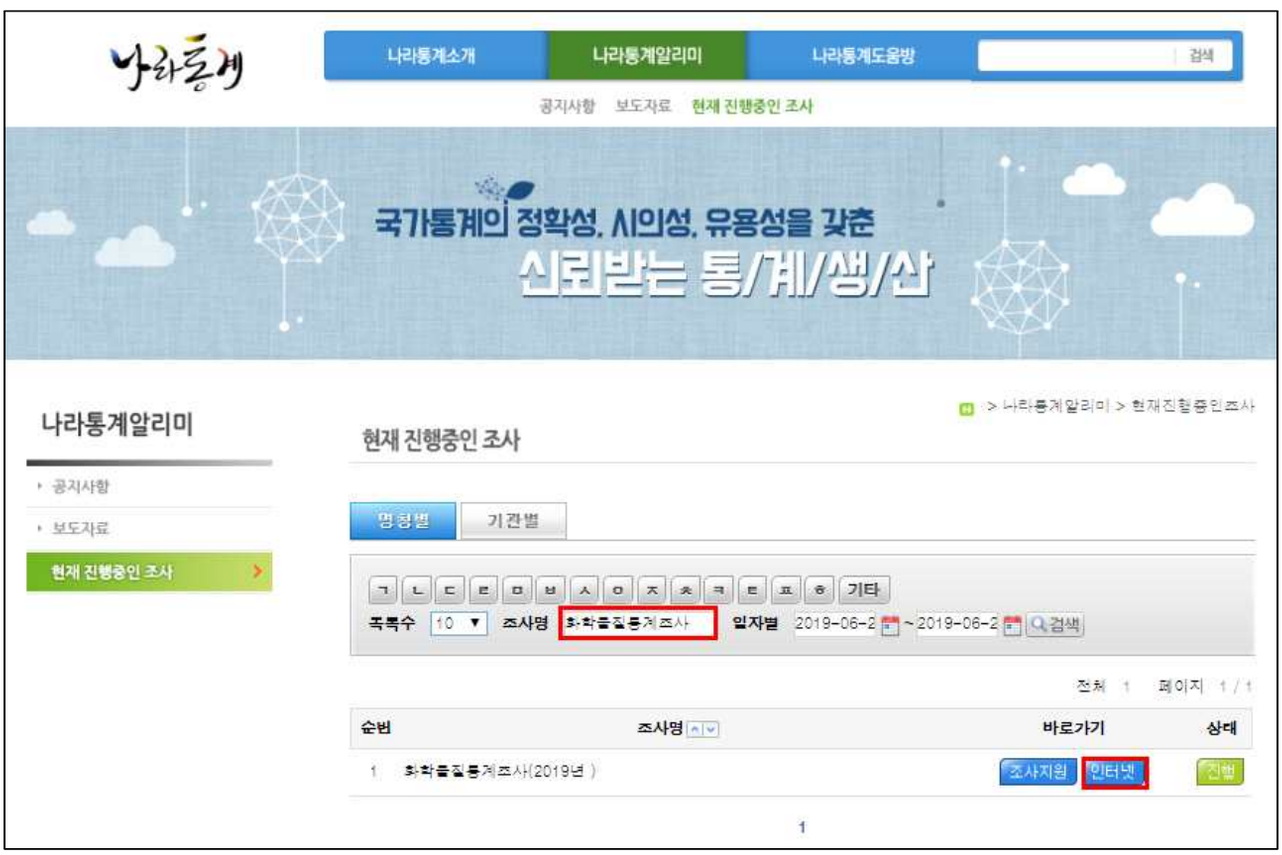

〈그림 6〉『진행중인 통계조사』내 검색결과 화면

2 신규사업장 시스템 가입하기

- 신규 통계조사 보고 업체의 시스템 가입

1)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상단의「통계조사보고」또는 오른쪽 하단에 「통계조사 참여 바로가기」를 클릭

〈그림 7〉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메인화면

2) 통계조사보고(참여하기)의 로그인 창 하단의「회원가입」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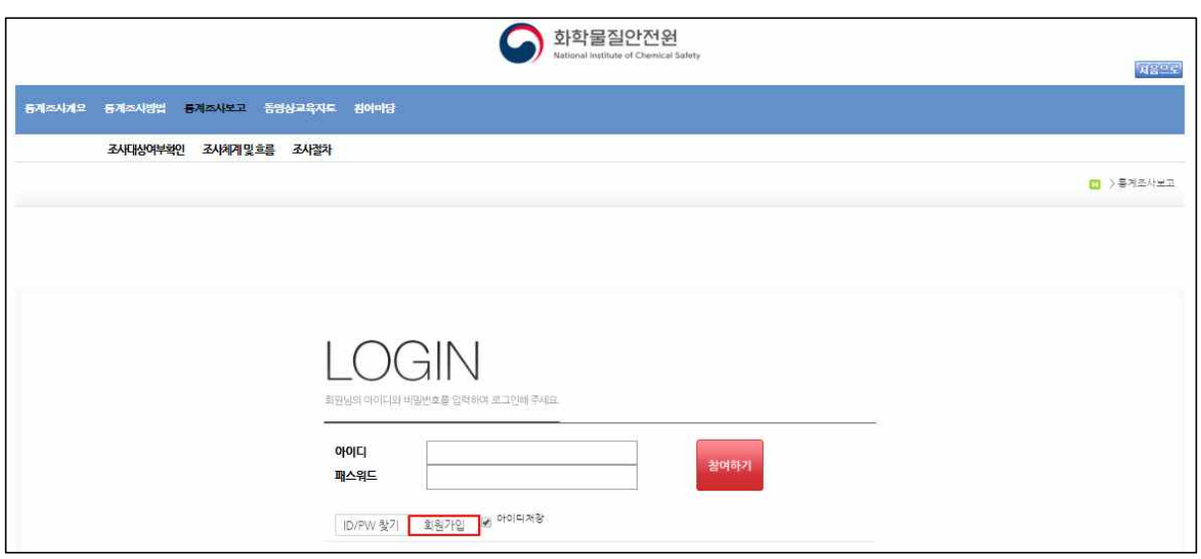

〈그림 8〉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가입

3)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업체명 검색 시 업체(사업장)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검색신규업체 가입하기」 버튼이 활성화 되며, 해당 버튼 클릭

〈그림 9〉 신규업체 시스템 가입

4) 업체 정보/로그인 정보/입력자 정보를 입력한 후 「가입하기」 버튼 클릭

〈그림 10〉 신규업체 가입 시 입력 정보

※ 비밀번호 재발급 질문, 재발급 답변, 입력자 이름, E-mail, 번호, 근무처 전화 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등은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분실 시, 정보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므로 정확한 입력 요망

☞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사업장등록번호 입력」 버튼을 클릭

〈그림 11〉 기존 업체 여부 검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창이 나오면,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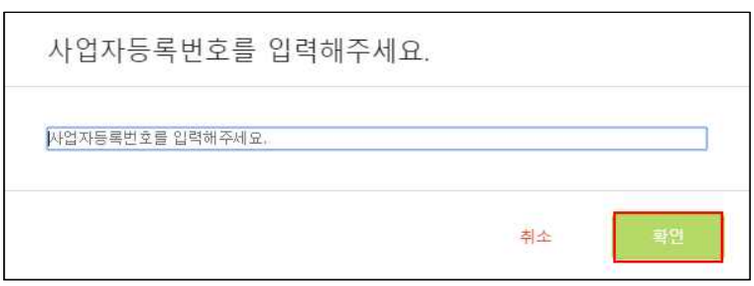

〈그림 1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창

☞ 주소입력(도로명 주소)은 우편번호 검색기능을 통해 세부 주소를 입력

〈그림 13〉 우편번호 검색(도로면 주소 입력)

☞ 「아이디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ID) 입력창이 나오면,
아이디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그림 14〉 아이디(ID) 입력창

⇒ 업체정보 모두 입력 후 「가입하기」 버튼 클릭
⇒ 시스템 가입 성공 알림창이 나오면 가입 성공
※ 시스템 가입은 관할청 승인 후 로그인 및 통계조사표 작성이 가능

〈그림 15〉 시스템 가입 성공 알림

3 기존사업장 ID&PW 찾기

1) 로그인 화면에서「ID/PW 찾기」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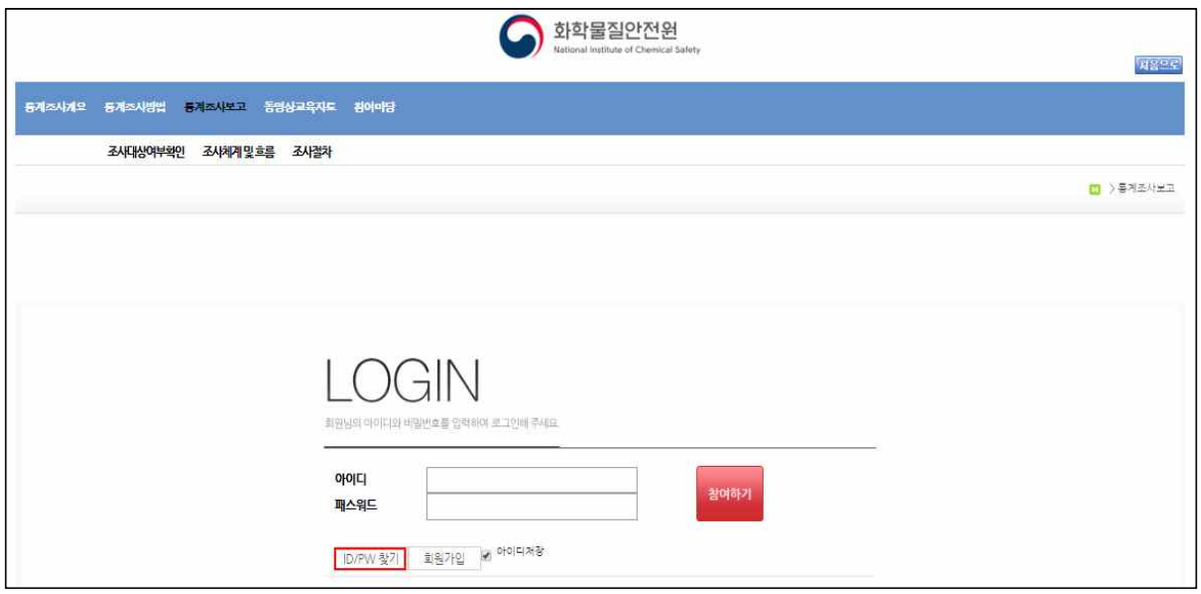

〈그림 16〉 아이디(ID)/비밀번호(PW) 찾기

2) 가입 시 등록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기존 ID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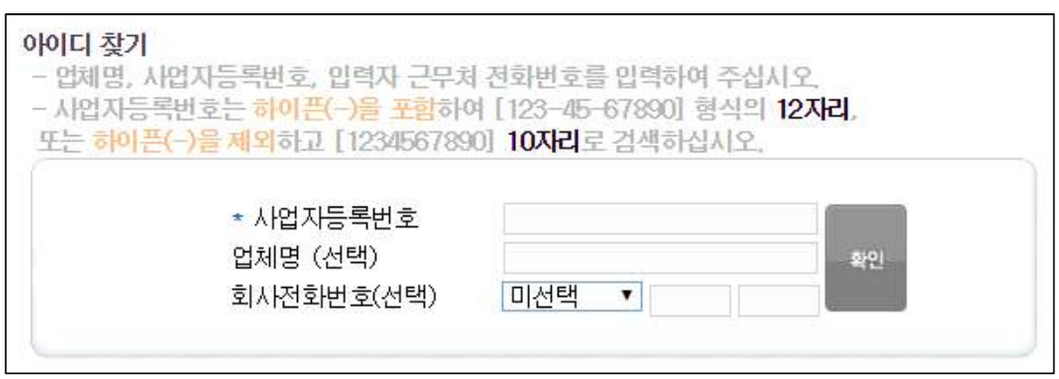

〈그림 17〉 아이디 찾기

3) 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 입력자 이름, 비밀번호 재발급 질문, 비밀번호 재발급 답변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비밀번호 재발급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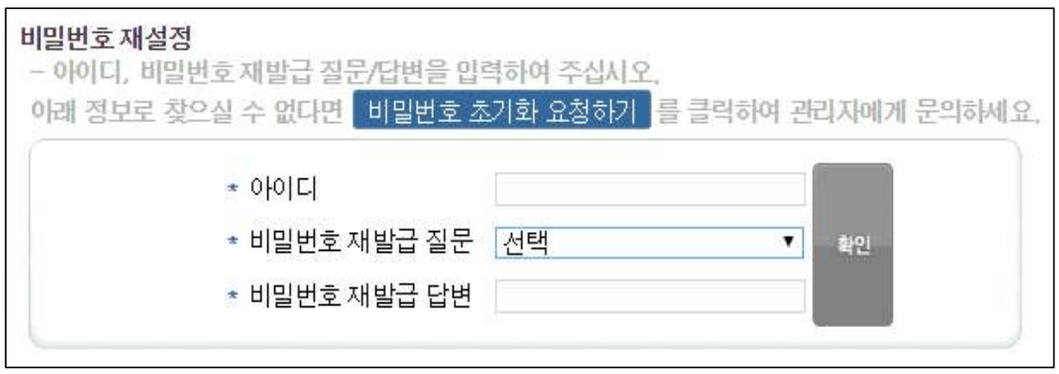

〈그림 18〉 비밀번호 찾기

4 시스템 로그인

1)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상단의 「통계조사보고」 또는 왼쪽 하단에 「통계조사 참여 바로가기」를 클릭

〈그림 19〉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메인화면

2) 로그인 창에 시스템 가입 시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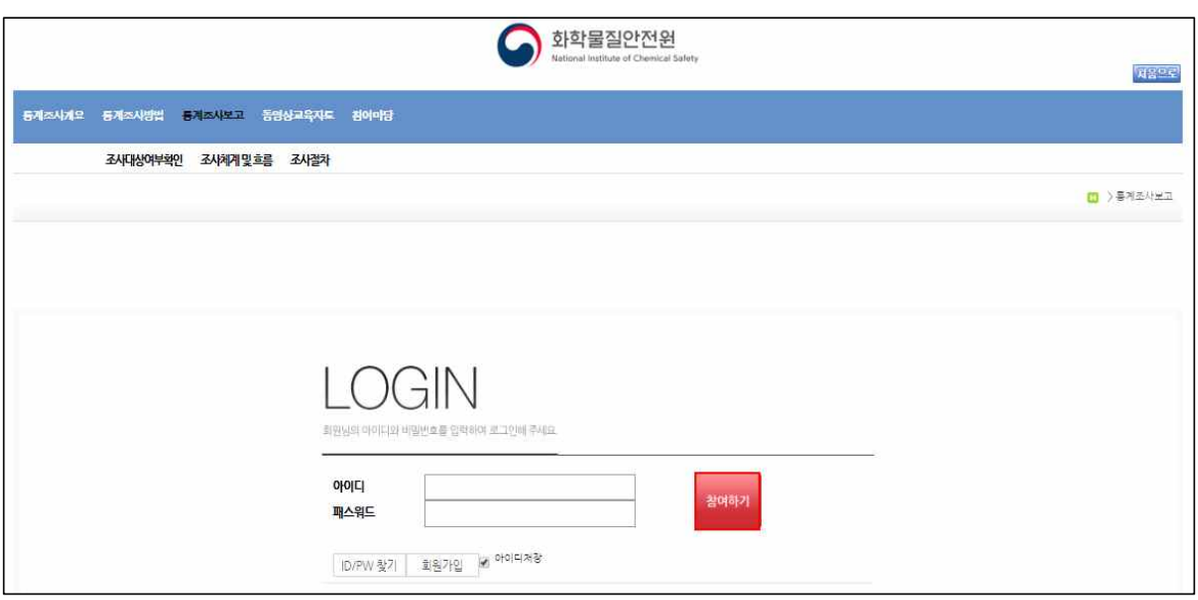

〈그림 20〉 통계조사 보고시스템 로그인

5 통계조사 보고

- 통계조사보고는 화면 상단의 「통계조사보고」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

〈그림 21〉 통계조사보고 메뉴

가. 입력자정보

- 업체정보, 로그인정보 및 입력자 정보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한 후 상단 목록에서 [입력자정보] 메뉴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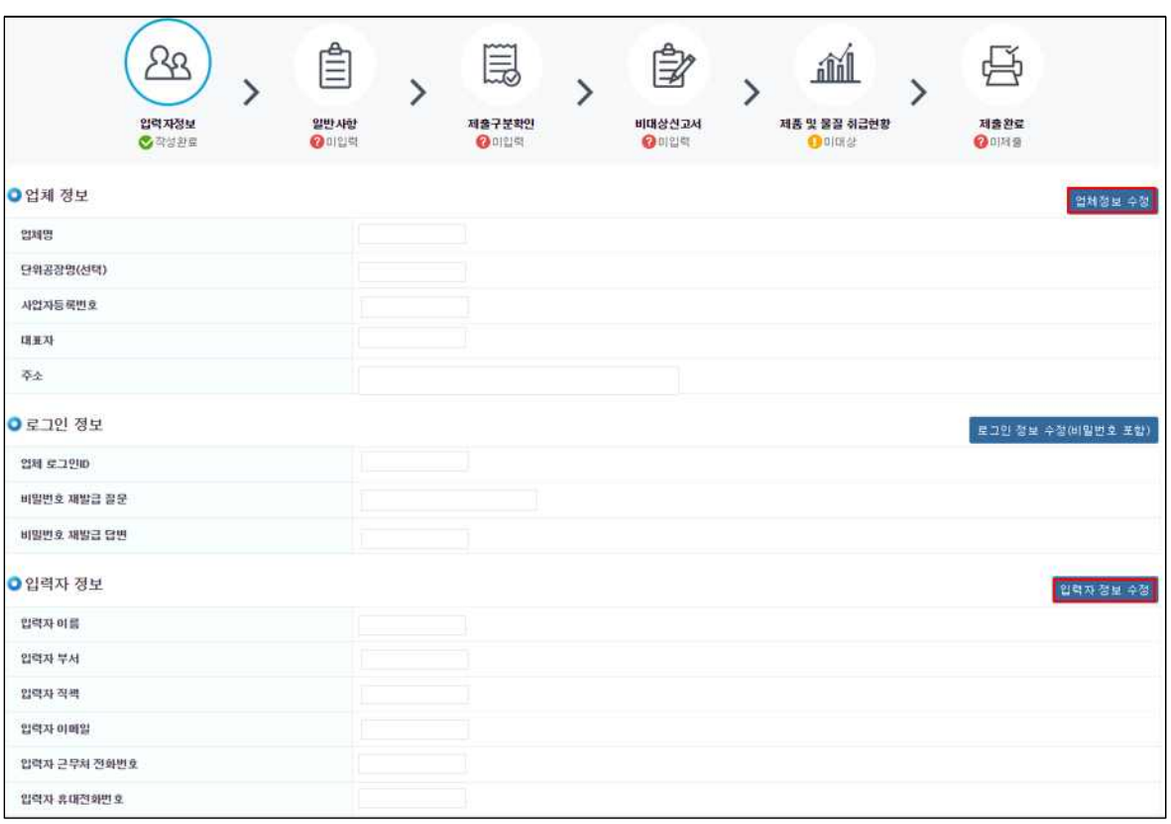

〈그림 22〉 입력자정보

☞ 기존 업체정보에 기입되어있던 업체 정보(업체명, 단위공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수정 시 사유 입력을 통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림 23〉 업체정보 수정(승인필요)

2) 로그인/입력자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경우, 정보를 수정한 후 「저장」 버튼 클릭

☞ 비밀번호(PW)/입력자/이름/부서/직책/이메일(E-mail)/근무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정보만 승인 없이 수정가능

〈그림 24〉 로그인 정보 수정

〈그림 25〉 입력자 정보 수정

나. 일반사항

〈그림 26〉 1.일반사항 퀵메뉴

- "일반사항"은 기본정보와 일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일반사항 구성항목>

구 분	항 목	
기본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영업허가 여부
	우편번호/소재지 주소	관할환경청
일반사항	대표업종	종업원수
	연간매출액	부지면적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상수원 보호구역명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명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명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	화학사고 예방, 대응 방재약품
	화학사고 예방, 대응 방재장비	비상연락망 부서명/전화번호

※ 작성자 정보 확인을 위해 "일반사항" 하단에 정보작성

1) 좌측의 메뉴 목록에서「통계조사보고」-「일반사항」을 클릭

〈그림 27〉“일반사항” 입력정보

(1) 기본정보

☞ 기본정보는 시스템 가입 시 입력한 업체의 기본정보를 보여준다.

☞ 기본정보 내용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입력자정보수정” 메뉴를 통해 수정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반영된다.

☞ 관할환경청 정보는 소재지 주소에 따라 자동입력

☞ 영업허가 여부는 직접 입력

〈그림 28〉 기본정보

(2) 일반사항

가) 대표업종 입력란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업종 선택

〈그림 29〉 일반사항 – 대표업종 선택

나) 종업원수, 연간매출액, 부지면적[㎡단위] 입력

다) 산업단지 입력란의 버튼을 클릭하여 산업단지 선택

☞ 소재지주소에 따른 해당산업단지의 목록만 나타나므로 해당산업단지 선택 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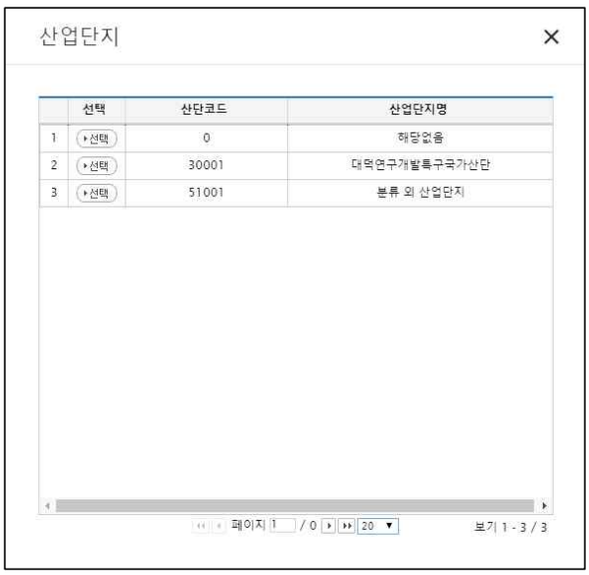

〈그림 30〉 산업단지 선택

라) 농공단지 입력란의 버튼을 클릭하여 농공단지 선택

☞ 소재지주소에 따른 해당농공단지의 목록만 나타나므로 해당농공단지 선택 후 확인

〈그림 31〉 농공단지 선택

마) 유입수계명/상수원보호구역명/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명은 지역주소 인근 위치에 따라 자동 제시된 정보 중 선택

바) 배출시설종류 선택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종류에 대해서 선택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란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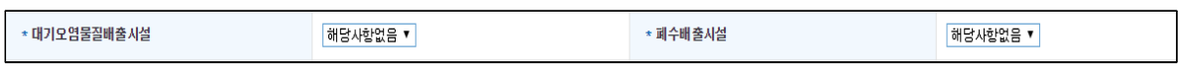

〈그림 32〉 배출시설 종류 선택

사) 화학사고 예방·대응

☞ 방재 약품 및 장비 보유 여부 기재

아) 비상연락망 정보 입력

☞ 화학사고발생시 초동 대응이 가능한 사업장(회사)내의 부서와 비상연락망(전화번호) 기재

자) 작성자 정보

☞ 작성자 부서명, 직위,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확인

(3) 저장하기

☞ “일반사항” 작성 후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사항” 저장

〈그림 33〉 “일반사항” 저장하기

다. 제출구분확인

1) “일반사항” 입력을 완료한 업체는 “제출구분확인” 화면으로 이동

〈그림 34〉 “제출구분확인”

(1) C, D 또는 E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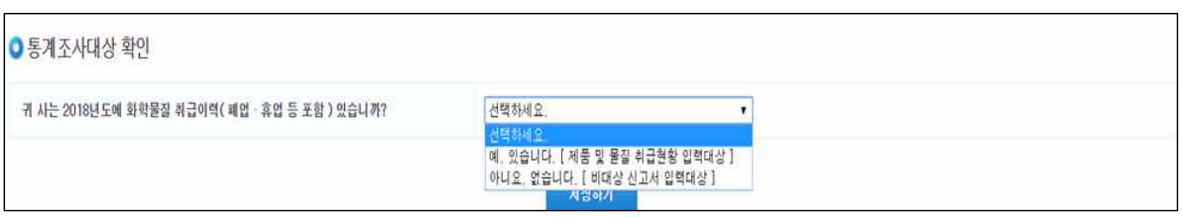

〈그림 35〉 C, D, E 업종 통계조사대상 확인 선택입력창

☞ 「예, 있습니다」 선택 시, 제품 및 물질취급현황으로 이동

☞ 「아니오, 없습니다」 선택시, 비대상신고서 작성으로 이동

(2) C, D 또는 E 외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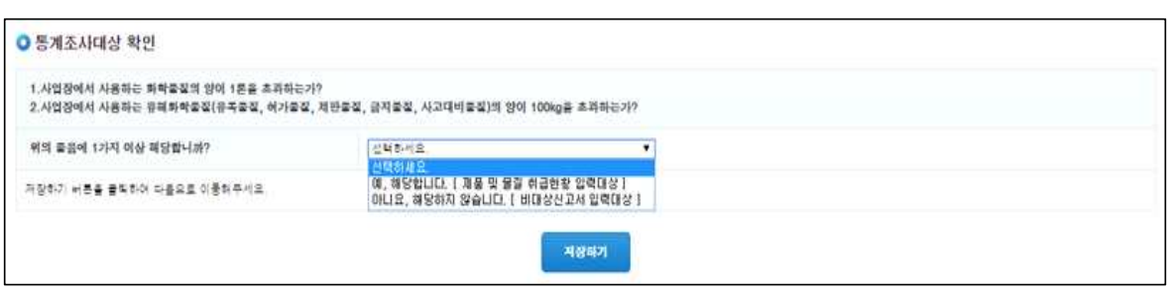

〈그림 36〉 C, D, E 외 업종 통계조사대상 확인 선택입력창

☞ 「예, 해당합니다」 선택 시, 제품 및 물질취급현황으로 이동

☞ 「아니오,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택시, 비대상신고서 작성으로 이동

라. 비대상 신고서

1) “제출구분확인” 입력을 완료한 업체는 “비대상신고서” 화면으로 이동

☞ 신청인 정보, 신고사항 부문은 “일반사항”의 정보 자동 기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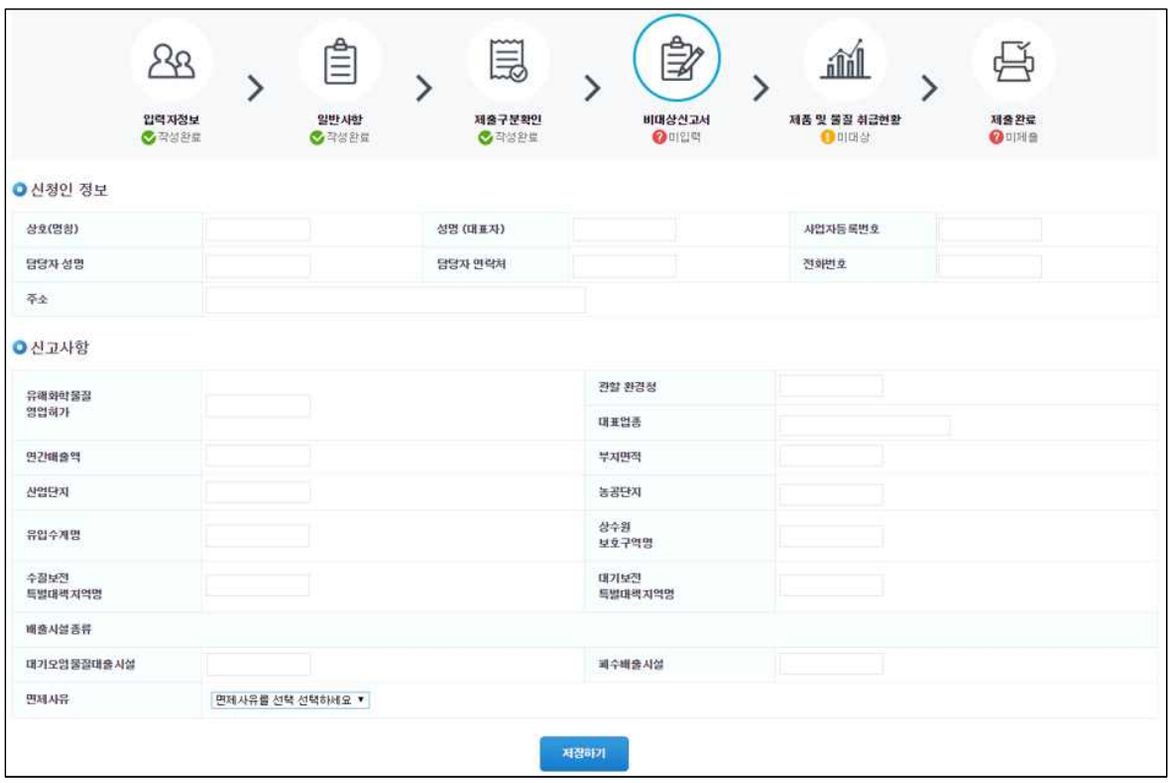

〈그림 37〉 “비대상신고서”

2) 「별표의 기준량 미만 취급」,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음」, 「기타(폐업, 휴업 등)」 중 한 가지 면제사유 선택

☞ 선택 후, 「저장하기」 클릭

〈그림 38〉 “비대상신고서” - 면제사유 선택

3) “비대상신고서” 저장 다음으로 제출완료에서「제출」클릭 후 인쇄

〈그림 39〉“비대상신고서” - 제출

마. 제품 및 물질취급현황

- 통계조사 보고대상으로 확인된 업체는 제품 및 물질취급현황, 구성성분정보, 성분보유자정보 등의 제품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 “제품 및 물질취급현황” 정보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 홈페이지 직접입력
    - ☞ 제품을 1개씩 입력, 조사대상 물질이 적은 업체에 유용
  - Excel(엑셀)로 입력
    - ☞ 조사대상물질이 많은 경우 보고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업로드용 Excel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방법

1) 홈페이지 직접입력

가) 제품 및 물질취급현황

(1) 상단의 퀵메뉴 목록 “제품 및 물질취급현황” 항목을 클릭

〈그림 40〉 제품 및 물질취급현황

- 기존 사업장은 "제품 및 물질취급현황"의 '17년도 데이터 불러오기가 가능 (참고용으로 활용)
  - ☞ 「'17년도 데이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표출 또는 엑셀 다운 사용 가능
  - ☞ '17년도 데이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가능하며, '19년도 정보와 확인 필수

〈그림 41〉 '17년도 데이터 불러오기

〈그림 42〉 '17년도 데이터 불러오기 팝업창

☞ 「데이터 이관하기」 버튼 클릭하여 기존 '17년도 데이터를 불러옴

☞ '17년도 데이터 중 제품 일반정보만 이관(취급량 등의 정보 입력 필수)

〈그림 43〉 '17년도 제품정보 이관 화면

☞ 이관된 제품정보의 제품명 클릭 후, 제품별 필수 정보 입력 필요

〈그림 44〉 제품별 제품취급현황 입력화면

- 「'17년도 데이터 불러오기」 후 데이터는 참고용으로 실제 제품취급현황과 일치하도록 수정, 입력하도록 함

〈그림 45〉 제품취급현황 수정 클릭

☞ 제품취급현황 수정, 입력 후 하단의 「수정」 버튼 클릭하여 정보 반영

- '17년도 데이터 엑셀로 다운받기 가능, 다운받은 엑셀파일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엑셀로 다운받기」 버튼 클릭하여 기존 '17년도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받음

〈그림 46〉 '17년도 데이터 불러오기 팝업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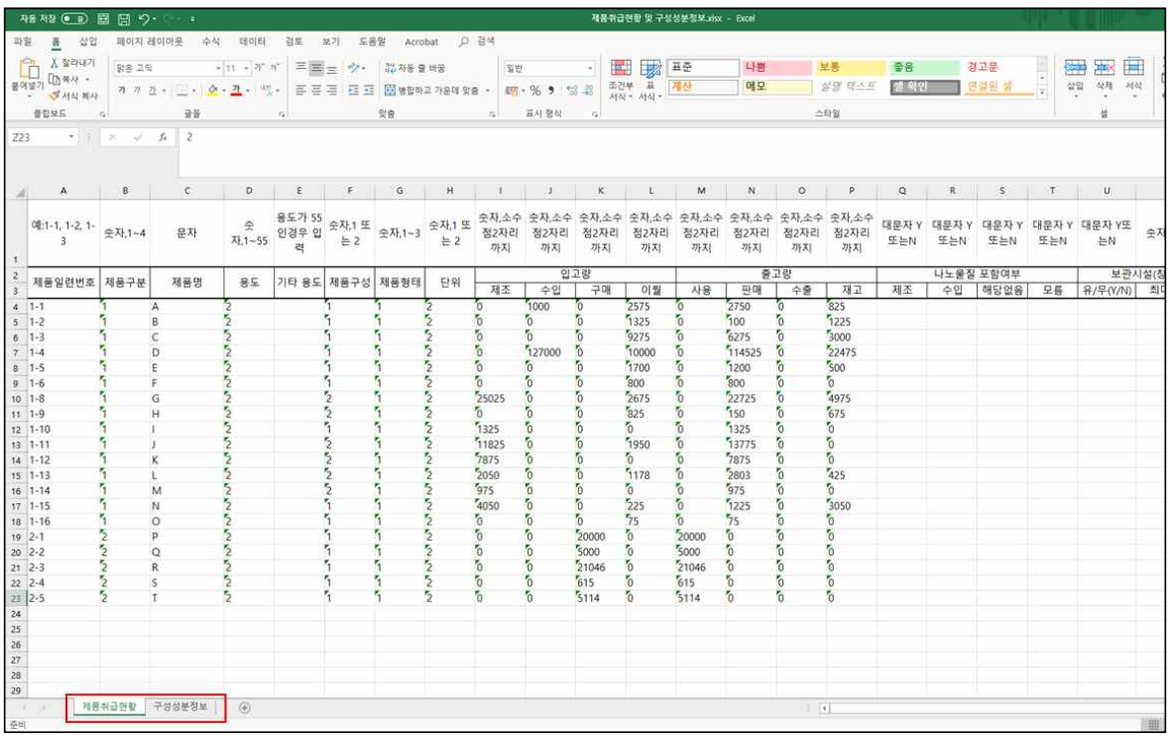

예:1-1, 1-2, 1-3	숫자,1~4	문자	숫자,1~55	용도가 55인경우 입력	숫자,1 또는 2	숫자,1~3	숫자,1 또는 2	숫자,소수점2자리까지	숫자,소수점2자리까지	숫자,소수점2자리까지	숫자,소수점2자리까지	숫자,소수점2자리까지	숫자,소수점2자리까지	숫자,소수점2자리까지	숫자,소수점2자리까지	대문자 Y 또는N	대문자 Y 또는N	대문자 Y 또는N	대문자 Y 또는N	대문자 Y또는N	숫자
제품일련번호	제품구분	제품명	용도	기타 용도	제품구성	제품형태	단위	입고량				출고량				나노물질 포함여부				보관시설(창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유/무(Y/N)	최대
1-1	1	A	2		1	1	2	0	1000	0	2575	0	2750	0	825						
1-2	1	B	2		1	1	2	0	0	0	1325	0	100	0	1225						
1-3	1	C	2		1	1	2	0	0	0	9275	0	6275	0	3000						
1-4	1	D	2		1	1	2	0	127000	0	10000	0	114525	0	22475						
1-5	1	E	2		1	1	2	0	0	0	1700	0	1200	0	500						
1-6	1	F	2		1	1	2	0	0	0	800	0	800	0	0						
1-8	1	G	2		2	1	2	25025	0	0	2675	0	22725	0	4975						
1-9	1	H	2		2	1	2	0	0	0	825	0	150	0	675						
1-10	1	I	2		1	1	2	1325	0	0	0	0	1325	0	0						
1-11	1	J	2		2	1	2	11825	0	0	1950	0	13775	0	0						
1-12	1	K	2		2	1	2	7875	0	0	0	0	7875	0	0						
1-13	1	L	2		2	1	2	2050	0	0	1178	0	2803	0	425						
1-14	1	M	2		2	1	2	975	0	0	0	0	975	0	0						
1-15	1	N	2		1	1	2	4050	0	0	225	0	1225	0	3050						
1-16	1	O	2		1	1	2	0	0	0	75	0	75	0	0						
2-1	2	P	2		1	1	2	0	0	20000	0	20000	0	0	0						
2-2	2	Q	2		1	1	2	0	0	5000	0	5000	0	0	0						
2-3	2	R	2		1	1	2	0	0	21046	0	21046	0	0	0						
2-4	2	S	2		1	1	2	0	0	615	0	615	0	0	0						
2-5	2	T	2		1	1	2	0	0	5114	0	5114	0	0	0						

〈그림 47〉 '17년도 데이터 엑셀 파일

☞ 다운받은 엑셀은 '제품취급현황' 시트와 '구성성분정보' 시트로 구성되어 있음

☞ 다운받은 엑셀의 '17년도 데이터를 참고하여 제품취급현황과 구성성분정보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도록 수정, 입력

(2) 제품구분입력란의 ▼ 버튼을 클릭하여 제품구분을 선택

(3) 조사대상 제품명(상품명) 입력

(4) 용도입력란의 🔍 버튼을 클릭하여 용도선택 창에서 용도를 선택

☞ 용도선택 창에서 해당용도를 선택, 기타를 선택한 경우는 구체적인 기타용도직접기재

(5) 제품구성입력란의 ▼ 버튼을 클릭하여 단일, 혼합 중 택 1

☞ 제품이 1가지 성분 또는 1가지 성분과 물(water)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단일 선택

☞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혼합 선택

☞ 제품구성을 '단일'로 선택한 경우 구성성분 입력 시 1개 물질만 입력할 수 있음 (예

: 98% 황산은 2%에 해당하는 물(water)은 입력하지 않음)

(6) 제품형태입력란의 ▼ 버튼을 클릭하여 고체, 액체, 기체 중 택 1

(7) 단위입력란의 ▼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단위 선택

☞ 단위는 ton, kg 2종류로 구성되어 있음

※ 단위 선택 시 ton, kg 선택에 주의 필요

(8) 제품의 취급현황 정보 중 입고량〈제조/수입/구매/이월〉 값을 입력

☞ 제품의 취급현황 정보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입력, 입고량 합계는 자동계산 됨

(9) 제품의 취급현황 정보 중 출고량〈사용/판매/수출/재고/손실·폐기〉 값을 입력

☞ 손실/폐기량, 출고량 합계는 자동계산 됨

(10) 제품의 구성성분 중 나노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해당없음/모름 중 클릭하여 택1

(11) 취급시설 현황 정보 중 〈보관시설(창고)/저장시설(탱크)/제조·사용시설〉에 대하여 〈있음/없음〉 중 선택과 〈최대 보관·저장량(톤)〉 입력

(12) 제품의 취급현황정보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선택제품추가" 버튼 클릭

☞ '선택제품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란에 아래의 입력제품의 정보가 추가 됨

※ 입력이 완료된 제품은 검색기능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제품선택 후 "삭제" 버튼을 통해 선택 삭제 가능

※ [붙임1]구성성분정보, [붙임2]성분보유자 정보는 아래의 제품정보 입력란에서 입력 가능

나) [붙임 1] 구성성분정보

(1) "구성성분정보"란의 「미입력」을 클릭

☞ 「미입력」을 클릭하면 해당제품의 성분만 입력가능

〈그림 48〉 구성성분정보 미입력 클릭

(2) [붙임1] 구성성분정보 입력창이 나타남

〈그림 49〉 [붙임1] 구성성분정보- 작성근거 선택

(3) 작성근거 선택 후 “추가” 버튼 클릭

〈그림 50〉 [붙임1] 구성성분정보- 추가 클릭

(4) 물질등록 입력창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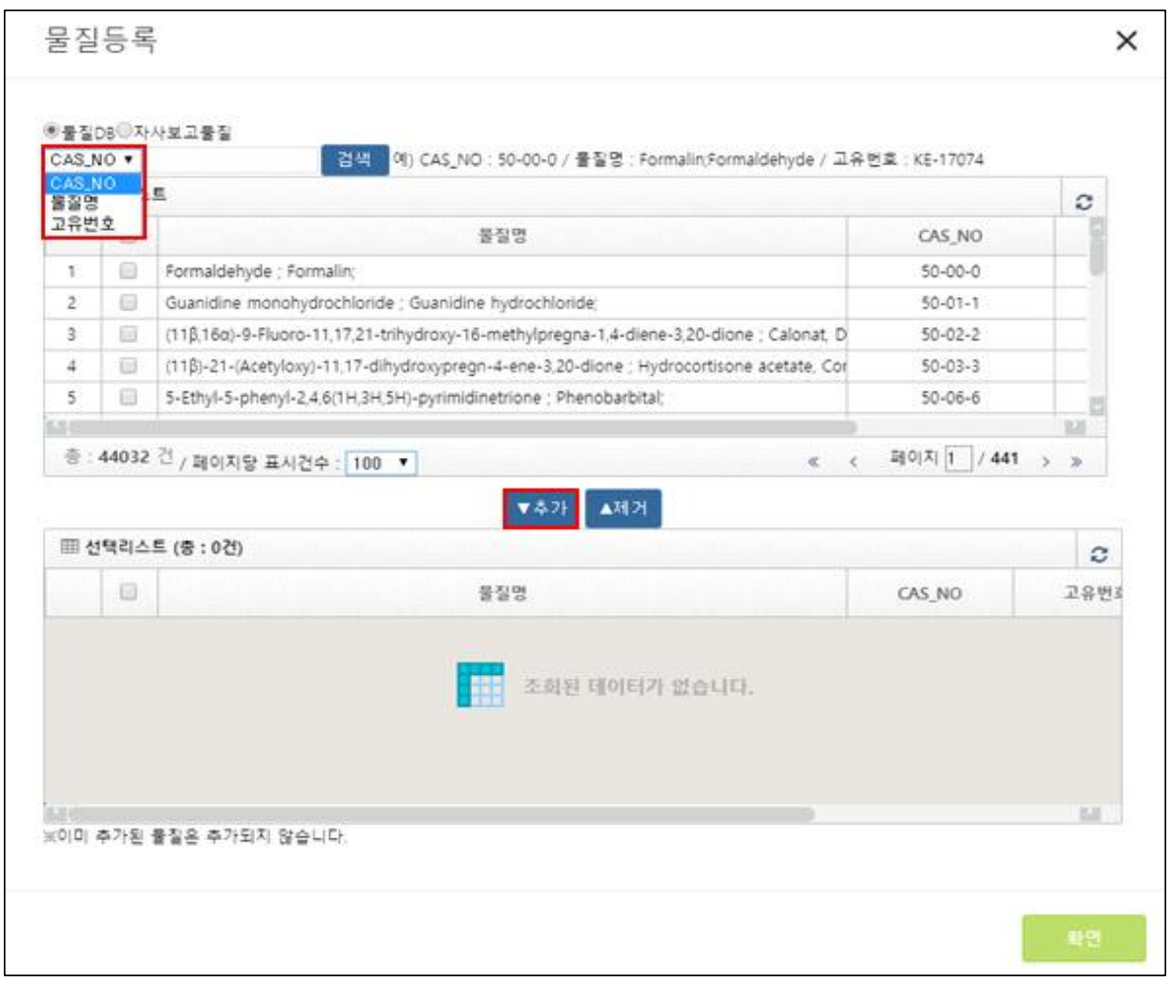

〈그림 51〉 물질등록 입력창

① 물질명(영문) 또는 CAS No., 고유번호를 입력한 후「검색」버튼을 클릭

② 검색결과 목록에서 물질을 선택하고「추가」버튼 클릭

☞ 물질 검색 창에서「자사보고물질」버튼을 선택하여 자사가 입력한 물질 목록을 볼 수 있음

③ 물질이 목록에 없는 경우「신규물질등록」버튼 클릭

〈그림 52〉 신규물질등록 화면

☞ CAS No. 또는 고유번호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Q&A를 통해 관리자에게 문의 가능

☞ CAS No.는 규칙에 맞지 않는 번호 입력 시 오류안내 메시지가 나타남

④ CAS No.와 고유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 고유번호 입력란에 “-”을 입력

⑤ 물질정보(물질명, CAS No. 고유번호 등)를 알 수 없는 경우, “성분정보없음” 체크 후 “[붙임2] 성분보유자정보” 필수 입력

〈그림 53〉 성분정보없음

(6) 순도 및 함량(%)을 입력

※ 혼합물질의 경우, 2가지 이상 물질정보를 입력하여야하며, 함유량 합이 90% 이상인 경우 저장 가능

(7) 제조구분을 선택

☞ 제조구분은 "제품 및 물질취급현황"에 제조 값이 입력된 제품(상품)에 한하여 작성 〈제조(합성, 분리·정제, 추출) / 조제(혼합, 기타)〉로 구분 됨

☞ 제조 값이 입력되지 않거나, "0"으로 입력한 제품은 제조구분에서 "미대상"을 선택

(8) 다음 구성성분정보를 추가 입력해야 할 경우 「추가」버튼 클릭

(9) 구성성분정보를 입력한 다음 「저장」버튼 클릭

다. [붙임2] 성분보유자정보

(1) "성분보유자정보"의 「미입력」을 클릭

〈그림 54〉 [붙임2] 성분보유자 정보 입력

☞ 제품의 구성성분 정보 입력 시 작성근거를 '자료없음' 또는 구성성분 추가 시 구성성분정보를 영업기밀로 선택한 경우 성분보유자 정보를 입력

(2) "[붙임2] 성분보유자정보" 입력 창이 나타남

〈그림 55〉 성분보유자정보 입력창

(3) 구성성분정보 미기재 사유 선택

(4) 상호 🔍 버튼을 클릭

(5) 상호 조회 창에서 업체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검색

〈그림 56〉 성분보유자 업체검색

(6) 업체명이나 사업자번호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업체직접입력」버튼 클릭

〈그림 57〉 성분보유자 업체 직접입력

(7) 성분명세서 보유자가 국내업체인지, 해외업체인지 선택

(8) 국내업체인 경우, 성분명세서 보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입력 후「확인」버튼 클릭

(9) 해외업체인 경우 업체명을 입력 후「확인」버튼 클릭

(10)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입력 후「확인」버튼 클릭

☞ 보유자가 해외업체인 경우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을 모르는 경우 "-"을 입력

라) 자료제출

(1) 모든 제품을 위의 순서대로 입력을 완료한 뒤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최종제출

☞ [붙임2]성분보유자 정보 항목이 '미대상'인 경우 제출 가능

〈그림 58〉 제출하기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이 완료 됩니다.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수정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엑셀(Excel)로 입력

가) 엑셀(Excel)양식 다운받기

(1) "제품 및 물질취급현황" 가운데상단의 「Excel양식 다운받기」를 클릭하여 제품정보 입력양식 다운받기

〈그림 59〉 엑셀(Excel)양식 다운받기

나) 엑셀(Excel)양식 첨부하기

(1) “제품 및 물질취급현황” 가운데상단의「엑셀파일 첨부하기」버튼 클릭

〈그림 60〉 엑셀(Excel)양식 첨부하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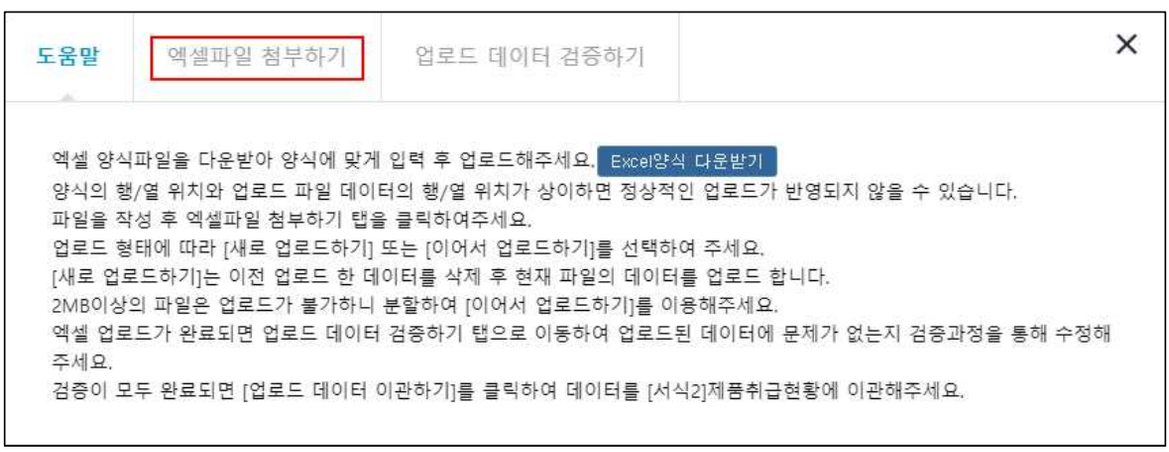

〈그림 61〉 엑셀(Excel)양식 첨부하기2

(2)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된 엑셀(Excel)양식 첨부

※ 제품 및 물질취급현황 엑셀파일 첨부 시 반드시 업로드용 엑셀파일 첨부

(3) 첨부Excel「업로드」버튼 클릭

※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하면 조치사항에 따라 엑셀(Excel)양식에 맞춰 수정 후 재첨부

(4) 데이터 검증페이지에서「업로드 데이터 검증하기」버튼 클릭 후 검증이 완료되면「이관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완료

6 제출하기

- 제출완료

☞ 「“비대상신고서” 또는 “제품 및 물질취급현황”에서 저장 후, 제출완료에서 제출

☞ 「제출」 버튼 클릭

〈그림 62〉 제출완료

- 출력하기

1) 인쇄물 출력하기

☞ 「일반사항 출력하기」, 「제품취급현황 출력하기」, 「물질유통현황」 버튼 클릭

〈그림 63〉 인쇄물 출력하기

2) 수정요청

☞ 「수정요청」 버튼 클릭, 관리자의 승인 후 수정 가능

〈그림 64〉 수정요청

부 록

Ⅰ. 화학물질 통계조사 질의·답변 사례

1 통계조사 개요

Q1.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호, 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행정처분과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보고 :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 허위보고 및 제출명령 불이행 : 600~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2. 제출한 통계조사 자료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 기업이 제출한 화학물질 취급정보가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2019년 12월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심의신청서는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또는 비공개 됩니다.

Q3.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공개되는 건가요?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취급정보를 우선 공개합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질 또는 유해인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는 제외)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울러, 아래와 같이 사업장의 일반정보,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관·저장량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이 공개됩니다.
  1. 사업장의 일반정보
     - 사업장명, 대표자, 작성자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업종, 종업원 수
     - 관할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 배출시설종류(대기·수질)
  2.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관·저장량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현황
     -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화학사고 시 비상연락번호
  3. 화학물질 취급현황
     - 제품명, 제품정보(혼합물 여부, 유해화학물질 여부)
     - 화학물질(물질명, CAS No.)별 연간 입고량 및 연간 사용·판매량 범주
- 화학물질 통계조사 정보는「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시스템」(http://icis.me.go.kr/CDRopen)을 통해 공개됩니다.

2 통계조사 대상 기준 (사업장)

[참고]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9-96호)

1. 조사대상 사업장
   ①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 또는
   ②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사업장
2.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
   ①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②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제
   ③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3. [별표] 통계조사 제출 기준에 해당

Q1. 사업자등록번호는 1개이나 사업장이 2개 이상으로 나뉘어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가입하여 보고하여야 하는지, 통합하여 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단위사업장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1개이나, 사업장별 소재지가 다른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별로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Q2. 단순 보관·저장만 하는 경우 및 다량 구매 후 임대창고에 보관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인가요?

- 단순 보관·저장 및 임대 창고에 보관·저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두 조사대상입니다.

Q3.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경우 및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사대상인가요?

-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수입 또는 수출하는 사업장은 조사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저장 · 보관 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Q4. 당사에서 국내 판매 후 구매자가 다시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도 조사대상에 해당하나요?

- 제품의 수출의 경우 직접수출 뿐 만 아니라 타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위탁수출의 경우에도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Q5. 수출·입 사업장으로 수출·입에 관련된 서류작업(알선판매)만 할 경우도 조사대상인가요?

- 국내로 입고 없이 서류작업만으로(미취급) 화학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관 보세창고 등 국내로 입고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 제품의 수출의 경우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타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위탁수출의 경우에도 통계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Q6. 본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은 위탁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시 사용되는 약품도 위탁업체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위탁 처리하는 것도 본 사업장의 조사대상에 포함되나요?

-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사업장은 위탁처리업체가 아닌 본 사업장이 “위탁처리업체”에서 취급한 폐수처리 약품 등을 포함하여 사업장내 모든 화학물질 취급 현황(제품, 물질, 용도, 함량, 및 취급량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Q7. 무역 대리점업체로서 제품이 외부 저장업체에서 고객사로 전달됩니다. 5류 위험물을 중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조사대상인가요?

- 무역 대리점업체로 위험물 등을 국내에서 중간 판매만 하고, 보관·저장을 하지 않는 업체는 통계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비대상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Q8. '18년 1~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운수업체입니다.

- 운반업은 통계조사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단, 제조, 사용, 보관 · 저장, 수출 · 입하는 사업장은 조사대상에 해당)

Q9. 연구시설에서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한정된 장소에서 특정인원이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해당 업체도 조사대상인가요?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제5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연구실)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구 목적의 시약 등을 판매, 수출·입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 포함 됩니다.

Q10.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인가요?

-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거나, 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사용(취급)하는 양이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화관법 제3조 제1항 1~12호 의거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 등 타법에서 관리되는 화학물질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1. 2018년 12월 3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도 조사대상인가요?

- 조사대상 연도에 화학물질을 취급한 경우 조사대상입니다.

3 통계조사 대상 기준 (화학물질)

Q1. pH 조절제, 중화용 등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조사대상인가요?

- pH 조절제, 중화용 등 용도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입니다.

Q2. 제품을 세정하는 세정액, 전해액(표면처리액)등 조사대상 화학물질인가요?

- 제품세정액 및 전해액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조사대상입니다.

Q3. 기계장비 내 유압유/작동유/연마유/절삭유, 열매체유, 윤활유 등을 사용하여 기기를 가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조사대상에 해당하나요?

-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입니다.

Q4. 수처리용 고분자 응집제 및 유기응결제(PAC, 폴리머 등)는 조사대상 화학물질인가요?

- 수 처리용 고분자 응집, 응결제도 화학물질로서 취급 시 조사대상 화학물질입니다.

Q5. ABS, HIPS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나요?

- 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HIPS(Styrene-Butadiene Copolymer)는 화학물질로서 조사대상입니다. 다만, 고유의 형상(모양과 상태)을 가지면서 사용 중 형상이 변화되지 않은 플라스틱 완제품(그릇, 컵류 등)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Q6. 플라스틱 원재료인 펠렛상의 수지류(폴리프로필렌 등), 우레탄, 나일론 등 사출기를 이용하여 압출성형 합니다. 이러한 원재료도 조사대상인가요?

- 플라스틱 원재료인 펠렛상 고분자화합물은 조사대상입니다.

Q7. 용접봉 및 용접와이어도 조사대상 화학물질 인가요?

- 용접봉은 철강재(탄소강, 주철 등) 및 니켈, 알루미늄 등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접와이어는 납, 망간, 주석 등 성분으로 용접 부분에 접합부에 녹여 붙이는 것으로

고유의 형상(상태)이 변화되므로 조사대상 화학물질입니다.

Q8. 수출품에 방청유가 사용됩니다. 이 경우 방청유도 조사대상 화학물질에 해당되는 건가요?

- 제품(수출품)의 표면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청유는 조사대상 화학물질입니다.

Q9. 제조공정 내 냉각수를 첨가한 수용성 절삭유도 조사대상 화학물질인가요?

- 제조 공정 내 사용되는 수용성 절삭유는 조사대상 화학물질입니다

Q10. 제품을 만드는 과정 중 표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락카 스프레이도 통계조사 대상인가요?

-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부원료 등 모든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의 미관, 경고문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페인트, 락카 스프레이 등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Q11. 정비공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와 신너 같은 경우에도 조사대상인가요?

-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페인트와 신너는 조사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사업장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은 제외됩니다.

Q12. 콘크리트 궤도부설을 위한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 레미콘의 원자재 및 콘크리트용 혼화제도 조사대상인가요?

- 레미콘 원자재 및 콘크리트 품질 개선에 사용되는 혼화제는 화학물질에 해당되므로 조사대상입니다.

Q13. 원료로 점토와 납석, 장석, 석회석 등을 사용하는데 흙이나 돌 뿐 만아니라 석탄, 무연탄 등 광물도 조사대상 인가요?

- 흙, 돌, 광물 등 그 자체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들을 원료로 사용하여 화학적인 변형 및 추출·반응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여 취급하는 경우라면 조사대상입니다.

Q14. 이차전지용 분리막, 감광성 레지스터, 폴리에스테르 칩, 폴리에스테르 산업용 원사(필라멘트사), 폴리에스테르 필름, 부직포, 합성스테이플 섬유 등은 조사대상인가요?

- 분리막 등 사업장의 취급 제품을 물리적 특성 변화 없이 취급되는 완제품은 통계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화학적 반응, 변형과정을 거쳐 다른 제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입니다.

Q15.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용 연료는 조사대상인가요?

- 도시가스, LFG, LPG, LNG 등 발전용 연료는 사업장 연료용 화학물질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6. 합금철,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의 경우도 조사대상 화학물질 인가요?

- 합금철, 알루미늄 등 중금속은 조사대상 화학물질입니다.

Q17. 철강회사에서 나오는 제강분진도 조사대상 물질인가요?

- 제강분진이 폐기물로 처리된다면 조사제외대상이지만, 폐기물을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Q18. 폐비닐을 이용하여 고체원료인 폴리에틸렌을 생산하여 납품합니다.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건가요?

- 폐비닐로부터 폴리에틸렌을 분리, 정제하여 생산하므로 조사대상입니다. 또한 폴리에틸렌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첨가제, 공정보조물질 등도 조사대상입니다.

Q19.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유 등 폐기물도 조사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나요?

- 폐기물은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장의 pH 조절제 등 폐수처

리 약품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입니다.

Q20. A+B 혼합하여 C라는 완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게 되면 완제품 C는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C에 대한 A, B의 구성성분을 별도로 입력하는 건가요?

- A와 B를 혼합하여 완제품(C)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A, B, C 모두 통계조사대상으로, 제품(C)에 포함된 A, B 구성성분, 함량, 및 취급량 등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완제품 : 고유의 형상(모양과 상태)을 가지면서 사용 중 형상이 변화되지 않는 제품

Q21. 전자담배 액상에 포함된 니코틴도 조사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나요?

- 니코틴도 화학물질에 해당되어 조사대상입니다.

Q22. 고무벨트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원료로써 천연고무 및 합성고무를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고무의 경우 통계조사 대상인가요?

- 천연고무, 합성고무 등은 통계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들을 원료로 화학적 반응, 변형과정을 거쳐 다른 제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입니다.

Q23.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을 입력할 때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시 기존물질, 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이 항목 중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조사대상 물질인가요? 조사대상 제외 물질인 경우는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가요?

- 화학물질 구성성분 정보(조사표 붙임1)의 입력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화학물질과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제품)”이 조사대상입니다. 또한 조사대상 제외물질 여부 등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으며, 물질별로도 공지되지 않습니다.
- 다만, 조사대상에서 적용 제외되는 물질은 화관법 제3조제1항 1~12호의 물질과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2019-96호) 제5조제2항 1~9호에 해당하는 물질이며 이에 해당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4. 환경부 고시에 등록된 기존화학물질 510종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통계조사 대상 제외인가요?

- 기존 화학물질 여부에 관계없이 화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은 통계조사 대상입니다.
- 다만,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화관법 제3조 1항 1~12호의 물질)은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5. 사업장에서 연간 사용(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일반화학물질 1,000kg, 유해화학물질 100kg 초과의 의미가 제품 무게의 총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무게(환산량)를 의미하는지?

- 통계조사대상 무게 기준은 제품 무게의 총량으로 판단하며, 단, 별표 기준은 C, D 또는 E 외 업종만 해당합니다.

Q25. 연료를 3톤 구매하여 2톤은 사업장 난방용으로 1톤은 가열로 연료로 사용하였는데 이때 통계조사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난방용으로 사용된 연료는 조사제외대상 화학물질에 해당되지만, 제품제조 등 취급 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대상입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반응기(가열로) 연료로 사용된 1톤의 연료만 보고하면 됩니다.

4 통계조사 제외 대상

[참고] 화관법 제3조제1항 1~12호 통계조사 적용제외 화학물질

①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② 「약사법」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른 마약류
④ 「화장품법」제2조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⑤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
⑥ 「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⑦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⑧ 「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조3항에 따른 화약류
⑩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한다.]
⑪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⑫ 「의료기기법」제2조1항에 따른 의료기기

Q1.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원료는 조사대상인가요?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원료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등록 등 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등록된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제품생산을 위하여 시설 등 관리·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냉각수 처리제, 폐수처리약품 등 화공약품은 통계조사 대상입니다.

Q2.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원료 및 첨가물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약처의 수입 식품 검역을 통과한 제품인데 조사대상인가요?

Q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약사법에 의한 관리대상인데 조사대상인가요?

Q4.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화장품법에 의해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는데 통계조사 대상인가요?

Q5. 단미사료(원료)와 보조사료(원료)를 배합한 배합사료 생산업체로 사료 관리법에 의해 등록 및 실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사료가 통계조사 대상인가요?

Q6. 비료 제조업체로서 비료관리법에 의해 각종 원료가 사용되는 경우 통계조사 대상인가요?

-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관법 제3조 1항 제1~12호에 따라 타 법에서 허가, 등록, 보고 등 법적 관리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타법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원료가 제품 제조 시 첨가 등 취급되는 화학물질은 통계조사 대상입니다.

5 제품 취급현황

Q1. 잉크, 페인트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색상 구분 없이 총량은 1톤을 넘지만 색상별로 따질 때 각각의 경우 1톤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빨강 500kg, 파랑 50kg, 흑색 1,100kg 라고 한다면 흑색만 보고 하면 되는 건가요? 동일한 잉크이면서 색상만 다른 경우 빨강 1,200kg 파랑 1,300kg 흑색 1,400kg 일 때 각각 색상별로 보고해야하는 건가요?

- 제조, 사용, 보관 · 저장, 수출 · 입하는 C, D 또는 E 업종의 사업장은 전량 조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라 C, D 또는 E 이외 업종에서는 페인트, 잉크 등 각 제품의 연간 사용(취급)량이 일반화학물질인 경우 1,000kg, 유해화학물질은 100kg을 초과 시 통계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Q2. 물이 90%, 화학물질 10%만 함유된 물질이 제품에 함유된 경우 해당 물질의 연간 사용량이 1톤이 넘으면 조사대상이 되는 건가요?

- 제조, 사용, 보관 · 저장, 수출 · 입하는 C, D 또는 E 업종의 사업장은 전량 조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라 C, D 또는 E 이외 업종에서는 단일물질, 혼합물질(제품)을 불문하고 각 "제품"의 연간 사용(취급)량이 일반화학물질인 경우 1,000kg, 유해화학물질은 100kg을 초과 시 통계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Q3. 플라스틱 사출 금형 제조업체로 연간 수입 되어진 A제품 1,200kg, B제품 500kg, C제품 30kg의 경우, A제품 1,200kg만 보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총 수입량이 1,000kg을 초과하였으므로, 세 가지 모두 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 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라 'C. 제조업'은 모든 화학물질이 통계조사 대상입니다.

- 따라서, A, B, C 제품 모두 통계조사 대상입니다.

Q4. 자동차 페인트에 첨가제(경화제)를 섞는 경우 새로운 물질을 제조하는 것인가요? 첨가제 역할만 하는 건가요?

- 자동차 페인트에 첨가제(경화제)는 제품의 용도상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으로 '제품 제조용' 첨가제로 볼 수 있습니다.

Q5. PET 원사에 화학적 도금을 하여 전자파 차폐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도금액 제품을 구매해서 공정에서 혼합하여 도금액을 만들어 전량 사용한 경우 제조인가요?

- 도금액 제품을 구매 후 공정과정에서 혼합하여 전량 사용한 경우는 제조가 아닌 사용에 해당됩니다.

Q6. 판매하는 제품 중 A, B제품이 있는데 두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고 제품 농도만 다릅니다. 이런 경우 제품 취급 입력 시 두 제품을 한가지로 통합해서 기입해도 되는 건가요?

- A, B 두 제품의 구성성분이 동일하더라도 농도(함량)가 다르면 각 제품별 포함된 화학물질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고 각각 구분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동일한 구성성분이고 농도만 다른 제품이 다수인 경우, 통계조사 보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엑셀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Q7. 점도별로 제품명을 달리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점도 이외에는 동일한 단일 물질입니다. 각 제품명별로 분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CAS 번호별로 분류를 해야 하는 건가요?

-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점도 이외에 동일한 단일물질로 구성되었다면, 제품별 포함된 화학물질의 함량을 고려하여 다를 경우 제품명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Ⅱ.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19.5.31] [환경부고시 제2019-96호, 2019.5.3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조사"란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통량"이란 조사연도의 화학물질 제조량과 수입량의 합에서 수출량을 뺀 것을 말한다.
3.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4. "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된 화학물질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상태로 포함되어 사업장에서 취급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5. "첨가제"란 제품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거나 성질·기능을 개선시키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6. "공정보조물질"이란 제품에 함유되지 않지만 제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7.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화학물질을 수출·입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제2장 화학물질 통계 조사방법

제3조(조사대상 사업장) 조사대상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제4조(조사지역) 조사는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조사대상 화학물질) ①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1.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을 포함한다)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질
3.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물질로 한다.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한국표준산업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7.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8. 고유의 형상(모양과 상태)을 가지면서 사용 중 형상이 변화되지 않는 완제품
9.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제6조(조사내용)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
2. 제조·수입·사용·판매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5.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정보 및 성분보유자 정보

제3장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 및 검토

제7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통계조사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통계청 웹 사이트의 나라통계조사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 사업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하고 보고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표 제출기한) 조사대상 사업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일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표를 보고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제출일로 본다.

1.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또는 4종을 보유한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7월 31일까지
2.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8월 31일까지
3.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9월 30일까지

제9조(조사표 검토 및 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조사표 또는 보고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조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 보고 자료와 상호 비교하여, 유통량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을 추출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의 신뢰성 분석과 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하고 조사표의 취합결과를 조사 기준연도의 다음해 12월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0조(교육)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통계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제출대상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에게 교육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의 검토 및 관리)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결과 가공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성과물(통계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장 기타사항

제12조(조사결과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통계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2.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대상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등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96호,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통계조사표 제출 기준(제5조제2항 관련)

「한국표준산업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양이 아래의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은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종 구분	일반화학물질(kg)	유해화학물질(kg)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	100
B. 광업	1,000	100
C. 제조업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F. 건설업	1,000	100
G. 도매 및 소매업	1,000	100
H. 운수 및 창고업	1,000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100
J. 정보통신업	1,000	100
K. 금융 및 보험업	1,000	100
L. 부동산업	1,000	10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0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000	10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0	100
P. 교육서비스	1,000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	100

■ [별지 제1호서식]

승인번호
제 106010 호

이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 등 화학안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년 월)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환 경 부

1. 일반사항

작성일자 년 월 일

①	업체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소재지 주소					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 제조업 [ ] 사용업 [ ] 보관·저장 [ ] 판매업 [ ] 운반업 [ ] 없음	⑥	관할 환경청	
⑦	대표업종		⑧	종업원 수	명	⑨	연간 매출액	억원	⑩	부지면적	m^2
⑪	산업단지		⑫	농공단지			⑬	유입수계명			
⑭	상수원 보호구역명		⑮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 ] 팔당 Ⅰ권역 [ ] 팔당 Ⅱ권역 [ ] 대청 Ⅰ권역 [ ] 대청 Ⅱ권역 [ ] 해당 없음		⑯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명	[ ]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 [ ] 여천 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 해당 없음		
⑰	배출시설 종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종			폐수배출시설 ( )종			[ ] 해당 없음			
⑱	화학물질 취급시설 종류, 위치 및 규모	2. 제품취급현황에 작성				⑲	비상연락망	(부서명)		(전화번호)	
⑳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재 약품 보유 여부	[ ] 모래 [ ] 가성소다 [ ] 기타		[ ] 소석회 [ ] 탄산소다	방재 장비 보유 여부		[ ] 소화 장비 [ ] 흡착포	[ ] 개인보호구 [ ] 기타		
㉑	작성자 정보	부서명		직 위				이 름			
		전화번호	(직장) (휴대폰)	팩스번호				E-mail 주소			

※ 작성자 이름, 전화번호, E-mail이 잘못 기재되어, 통계조사표 검증, 화학물질정보공개 사전확인 등과 관련한 안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사업장에 있음

2. 제품취급현황

제품 구분	일련번호	제 품 명 (상품명)	용도	제품 구성	제품 형태	연 입고량(톤/년)				연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포함 여부	취급시설 현황			
						제조	수입	구매	이월	사용	판매	수출	재고	손실/폐기		시설 구분	있음	없음	최대 보관·저장량 (톤)
제조(또는 수입) 화학제품	1			[ ] 단일 물질 [ ] 혼합 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저장시설(탱크)	[ ]	[ ]	
																제조·사용시설	[ ]	[ ]	-
제품 제조용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등	2			[ ] 단일 물질 [ ] 혼합 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저장시설(탱크)	[ ]	[ ]	
																제조·사용시설	[ ]	[ ]	-
기타 시설, 장치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제품 (폐수처리 약품, 냉각수 등)	3			[ ] 단일 물질 [ ] 혼합 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저장시설(탱크)	[ ]	[ ]	
																제조·사용시설	[ ]	[ ]	-
보관·저장을 위탁받은 제품	4			[ ] 단일 물질 [ ] 혼합 물질	[ ]고체 [ ]액체 [ ]기체										□제조 □수입 □해당없음 □모름	보관시설(창고)	[ ]	[ ]	
																저장시설(탱크)	[ ]	[ ]	
																제조·사용시설	[ ]	[ ]	-

※ 구매, 판매량은 유상, 무상의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함

※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함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 나노물질 포함여부 : 제조(국내에서 의도적으로 나노물질을 제조한 경우), 수입(라벨링 등에 나노물질임을 명시한 물질을 수입한 경우), 해당없음(나노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모름(나노물질 포함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붙임1] 구성성분정보

일련번호	제 품 명 (상품명)	작 성 근 거	일련번호	구 성 성 분			제조 구분
				물 질 명	CAS No.	순도 또는 함량 (%)	
1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 ]MSDS [ ]시험성적서 [ ]기타 [ ]자료없음	1-1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1-2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2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 ]MSDS [ ]시험성적서 [ ]기타 [ ]자료없음	2-1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2-2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3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 ]MSDS [ ]시험성적서 [ ]기타 [ ]자료없음	3-1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3-2				[ ]합성,분리·정제,추출 [ ]혼합, 기타

※ “순도 또는 함량(%)”은 중량비(%)를 의미함

[붙임 2] 성분보유자 정보

일련번호	제 품 명 (상품명)	성 분 명 세 서 보 유 자							미기재 사유 (1)~(3)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1									
2									
3									

※ 작성 대상자 : 수입 또는 구매하였으나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하여 [붙임1] 구성성분정보의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미기재 사유 중 1가지를 선택하고 및 성분보유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1) 국내 제3자가 성분명세서를 보유한 경우
(2) 제품 중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비(함유량,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제조사로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 제조업 [ ] 사용업 [ ] 보관·저장업 [ ] 판매업 [ ] 운반업 [ ] 없음	관할 환경청	
			대표업종	
			종업원 수	
	연간 매출액		부지면적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상수원보호구역명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 ] 팔당 I권역 [ ] 팔당 II권역 [ ] 대청 I권역 [ ] 대청 II권역 [ ] 해당 없음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명	[ ]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 [ ] 여천 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 해당 없음
	배출시설종류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종 [ ] 폐수배출시설 ( )종 [ ] 해당 없음		
	면제사유	[ ] 별표의 기준량 미만 취급 [ ]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음 [ ] 기타 (폐업, 휴업 등)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작성방법

면제 사유란에는 보기의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210㎜×297㎜[백상지 80g/㎡]

Ⅲ. 용어설명 및 주의사항

1 단일물질

-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이 1개인 화학제품(불순물은 제외)
- 화합물(Compound)
  - 화합물이란 "2개 이상의 다른 원소들이 화학적 반응(합성)에 의하여 일정 비율로 구성된 물질"로 탄소와 수소의 포함여부에 따라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구분됨. 즉, 화합물 1개로 구성된 제품은 단일물질로 분류
    [예시] 벤젠(유기화합물), 황산알루미늄(무기화합물) 등의 화합물
- 고분자화합물(Polymer)
  -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이는 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예시] 폴리에틸렌(Poly ethylene) : 단량체 에틸렌(Ethylene)이 중합반응하여 얻어진 (고분자) 물질

유기·무기 화합물		고분자화합물(Polymer)	
화학물질명	CAS번호	화학물질명	
Sodium chloride	7647-14-5	Polyehylene urethane resine 등	-
Benzene	71-43-2	ABS copolymer ; 2-Propenenitrile polymer with 1,3-butadiene and ethenylbenzene	9003-56-9
Hydrogen chloride	97-1-203	Phenol polymer with formaldehyde	9003-35-4

※ "고분자화합물 자체의 물질명과 CAS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단량체 각각의 물질명과 CAS번호를 표기하지 말 것

- 이성질체(Isomer)
  -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가 달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구조이성질체(o-, m-, p-), 입체이성질체(cis-, trans-) 및 혼합이성질체(Mixed isomers)가 있음.

    [예시] 구조이성질체 : o-Xylene(95-47-6), m-Xylene(108-38-3), p-Xylene(106-42-3), o-Cresol(95-48-7), m-Cresol(108-39-4), p-Cresol(106-44-5) 등

    혼합이성질체 : Xylene(1330-20-7), Cresol(1319-77-3) 등

- 수용액
  - 단일물질로 구성된 제품을 물에 녹여 농도를 달리하면서 취급
  - 예시 :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등의 수용액(물에 녹아있는 상태)

2 혼합물질

-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의 수가 2개 이상인 화학제품. 즉 2개 이상의 단일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혼합(mixture), 가공한 경우를 말함
- 합성유기착색제가 유기용제에 희석되어 취급하는 제품, 페인트, 접착제 등과 같은 혼합제품들
- 운송·보관 시 물질의 성질변화방지, 식별, 안전 등을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 고결방지제, 착색제, 방향제, 항분제 등이 첨가되어 있는 제품
- 합성, 분리·정제, 추출 :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서로 화학반응하지 않고 단순히 성분 비율만 변경된 경우
- 합성 :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서로 화학반응을 하여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성된 경우
- 분리·정제 : 혼합물질에서 물리적인 방법(온도변화 등)으로 어떤 특정한 물질을 얻는 것 (예 : 납사 정제 후 Benzene, Toluene, Xylene 등으로 분리하는 공정)
- 추출 :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 속에서 특정한 물질을 용해할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하여 성분을 분리해내는 것

3 화학물질명 표기방법

- 모든 화학물질명은 환경부가 발간한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명법에 의한 화학물질명 또는 일반명(ISO)을 기재

- 화학물질명 표기

(1) 일반적인 경우

상품명	화학물질명	CAS번호
Dioxidane, Oxidanyl 등	Hydrogen peroxide	7722-84-1
TCE, Trichlor, Trike, Tricky 등	Trichloroethylene	79-01-6

(2) 염료나 안료인 경우

- 입력의 편의상 「Color Index」명으로도 기재 (CAS 번호는 동일하나 C.I.는 색상에 의한 분류로 여러 개의 C.I.가 존재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명도 존재할 수 있음)

Color Index 또는 화학물질명	CAS번호
C.I. disperse orange 037	13301-61-6
C.I. disperse orange 076	
3-{[4-[(2,6-Dichloro-4-nitrophenyl)azo]phenyl]ethylamino} propanenitrile	

(3) 고분자인 경우

- 구조(이름)가 비교적 간단한 고분자는 IUPAC Name으로 기재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CA Index 명명방식인 “A polymer with B, C and D” 식으로 기재

구 분	IUPAC Name	CA Name	CAS번호
간단한 경우	Polyethylene glycol dilaurate	Poly(oxy-1,2-ethanediyl), α-(1-oxododecyl)-ω-[(1-oxododecyl)oxy]-	9005-02-1
복잡한 경우	없 음	1,3-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2,2-dimethyl-1,3-propanediol, hexanedioic acid and 1,6-hexanediol	68492-72-8

(4) 반응생성물인 경우

- 반응생성물이 2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혼합된 상태로서 서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할 필요가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응혼합물의 형태로 명명한 이름을 기재
- "Reaction products with A, B and C"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

(5) 자연에서 추출·정제·가공된 화학물질인 경우

- 자연(동식물 포함)으로부터 추출·정제·가공되어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단일물질로 간주
- Fatty acids, C14-18 and C16-18-unsatd., zinc salts [67701-12-6]
- Fatty acids, sunflower-oil [84625-38-7]
- Fats and Glyceridic oils, fish, oxidized, sulfonated [73398-62-6]
- Rose oil [8007-01-0]

4 CAS 번호

- CAS번호 :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ry Number로써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기재(조사시스템에서 검색 가능)

5 순도 및 함량

- 순도 : 단일물질 성분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정도
- 함량 : 구성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분량

(1) 기본원칙 : 구성성분별 함량을 모두 기재(함량 100%)

(2) 단일물질

- 소량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성분의 함량은 100%로 기재
  ☞ 황산 99%, 불순물 1%인 경우(순도 99%) ⇒ "황산 100%"로 기재
- 단일물질로서 물에 녹아 있는 경우는 "물의 함량을 제외"하고 기재

☞ Sodium hydroxide 90% 수용액 ⇒ “Sodium hydroxide 90%”

☞ Hydrogen chloride 35% 수용액 ⇒ “Hydrogen chloride 35%”

(3) 혼합물질

- 혼합물질은 물을 포함하여 함유된 모든 구성성분을 기재
- MSDS 작성 및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0.1%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그 해당성분도 기재
- 용제에 녹아 있는 경우는 “용제의 함량”도 각각 기재

(4) 함량을 범위로 알고 있는 경우

- 최대함량만을 알고 있다면, 최대값을 기재

☞ Sodium hydroxide 5% 이하 (< 5%) ⇒ 최대값 5% 기재

- 함량이 범위로 나타나 있는 경우 성분함량을 고려하여 100%기재를 원칙.
  다만, 함량범위를 고려하여 중간값 입력을 허용함.
  ※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의 함량은 최대값으로 입력

☞ Benzene 50~60% ⇒ 최대값 60% 기재

- 최소함량만을 알고 있는 경우 최소값을 기재

☞ Citric acid 5% (> 5%) 이상 ⇒ 최소값 5% 기재

- 여러 성분 중 하나의 성분이 최소함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성분의 함량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성분과 그 함량의 합이 100% 기재를 원칙

☞ “물 10%, acetamide 10%, Citric acid 60% 이상”인 경우
⇒ “물10%, acetamide 10%, Citric acid 80%”